

2025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25. 2. 13.(목) 07:30

□ 장소 : T&S빌딩 5층, 필다현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5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소집 통보일 : 2025. 2. 5.	
이사 정수 : 8인	재적이사 : 8인
감사 정수 : 2인	재적감사 : 2인

1. 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07:30~10:30

2. 장소 : T&S빌딩 5층, 필다헌(서울 중구 서애로 33)

3. 임원 참석 현황

- 참석 이사 : 김종철, 김동건, 김호정, 문휘창, 박정운, 양인집, 이돈구
- 불참 이사 : 최맹호
- 참석 감사 : 배한영, 장혜윤
- 불참 감사 : 없음

4. 안건

가. 심의안건

- (1) 학교법인 및 산하학교(기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 (2)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 (3)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채 승인(안)
- (4)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 (5)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
- (6)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총원 계획(안)
- (8) 한국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안)
- (9)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10)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총원 계획(안)

간인(서명)	김종철	이돈구	
--------	-----	-----	---

- (11)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안)
- (12)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교원 임용(안)
- (13)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202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14)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처분(안)
- (15)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김종철 의장(이사장)이 성원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박정식 처장이 재적이사 8인 중 7인 참석으로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 되었음을 보고하다.
- 이어 김종철 의장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5년 제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6. 전회 이사회 회의록 승인

- 김종철 의장이 전회 회의록 보고를 요청하자, 박정식 처장이 보고한 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전회 회의록을 승인하다.

7. 회의내용

가. 심의안건

(1) 학교법인 및 산하학교(기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 김종철 의장 : 제1호 안건을 상정하고, 재정위원회의 예산(안)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함.
- 양인집 이사(재정위원장) : 재정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학교법인 및 산하학교(기관)에 대한 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음을 보고함.

■ 재정위원회 논의 결과

(가) 승인 여부 : 각급 기관 예산(안) 원안대로 각각 승인

(나) 주요 논의 내용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 부설고는 예산 지침상 본예산 수립시에는 교육청 및 지자체 지원금을 편

간인(서명)

김종철

양인집



성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25 회계연도 본예산에 교육청지원금 등을 제외하고 제출하였으나, 추후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각종 지원금이 반영될 예정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 전체 예산 규모는 제2교사동 완공에 따라 전년대비 60억원 축소된 총289 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학부 등록금 3.75% 인상(학점당 83,000원), 일반 대학원 신설 등에 따라 등록금 수입은 8억원 증가됨
- 지출 예산에 편성된 온라인콘텐츠 개발비 9억원에 대한 구체적 집행 계획 및 거래업체 등에 대해 보고 요청.
- 사이버한국외대 산학협력단의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억2천만원 축소된 총4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타 사이버대학 산하 산학협력단과의 비교 분석 바람.

<한국외국어대학교>

- 전년대비 127억 증액된 총2,685억원(합산)으로 편성하였고, 학부 등록금 5% 인상, 대학원(통번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제외) 등록금 5% 인상하 여 등록금(수강료) 수입은 83억원 증가.
- 학교 재정 여건상 건축적립금을 0원으로 반영하였는데, 향후에는 학교발 전을 위한 건물 감가상각비 정도는 적립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 개선 필 요.
- 등록금 이외 기업체와의 산학협력, 연수사업, 단기과정 등의 활성화를 통 해 수입 증대 노력 주문.
- 산학협력단의 2025회계연도 본예산은 전년대비 59억원 축소된 총384억원 편성하였음. 구성원들의 책임감 고취, 연구비 수입 증대 등을 위해서는 확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추후 추경 예산 편성에서는 전년 도 수준 이상으로 연구과제를 수주하도록 노력 바람.

<학교법인 및 수익사업체>

- (주)외대어학연구소에 대한 학교법인의 지분율은 현재 41.29% 수준인데, 50%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액면가가 아닌 평가액으로 지분 매입하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추진 요청.
- (주)동원안전시스템의 경우, 급여, 퇴직급여 등 예측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는 보다 정확성 있는 예산 수립을 주문.

○ 이어 최형용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획조정처장, 박정식 학교법인 재무처장 등 이 각 기관별 2025회계연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각각 보고하고, 재정위원회 지적사항 등에 대해 답변하다.

간인(서명)	김종철	홍재민	
--------	-----	-----	---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심의안건 제1호 학교법인 및 산하 학교(기관)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각각 승인·의결하다.

□ 2025회계연도 예산 승인 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기관명	2025 본예산 총액	승인여부	비고
한국외국어대학교(합산)	268,503	원안승인	내부거래 제거반영
한국외대(개별)	244,539	원안승인	
사업지원처	18,845	원안승인	
국제학사	2,157	원안승인	
모현학사	798	원안승인	
후생파트	3,570	원안승인	
지식출판콘텐츠원	1,625	원안승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38,491	원안승인	
용인제2기숙사(SPC)	5,310	원안승인	
글로벌출기숙사(SPC)	4,434	원안승인	
사이버한국외국 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대	28,980	원안승인
	산학협력단	416	원안승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18,970	원안승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법인일반	8,039	원안승인
	법 인수익	25,219	원안승인
	(주)외대어학연구소	18,126	원안승인
	동원안전시스템(주)	9,015	원안승인
	(주)이지피에스	4,069	원안승인

(2)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 김종철 의장 : 제2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최형용 기획조정처장 :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세곡동 토지) 매각이 부결됨에 따라, 수입 예산으로 반영되었던 세곡동 토지 매각대금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출 부분에서는 송도캠퍼스 건설 공사비 465백만원 증액, 제세공과금 200백만원 감액, 보수 765백만원을 감액하는 등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함.
- 김종철 의장 : 임원들이 숙의한 후, 심의안건 제2호에 대하여 원안을 승인

간인(서명)	김종철	최형용	
--------	-----	-----	---

하겠음을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하다.

□ 202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승인 사항

(가) 승인 여부 : 원안 승인

(나) 승인 내역

- 기정예산액 : 232,620백만원
- 경정예산액 : 232,120백만원
- 증 감 액 : -500백만원

(다) 주요 증감 내역

수입		지출	
고정자산매각 수입	토지 -500백만원	고정자산매입 지출	건설중인자산 +465백만원
		관리운영비	제세공과금 -200백만원
		보수	-765백만원
합계	-500백만원	합계	-500백만원

(3)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채 승인(안)

- 김종철 의장 : 제3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최형용 기획조정처장 : 송도캠퍼스(가칭) 2단계 교사 건축공사비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금12,585,000,000원(일백이십오억팔천오백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며, 차입 조건은 금리 연5.67%(변동이율, '24년 11월 18일 우리은행 이자율 기준), 2년거치 8년 분할상환 예정임. 원리금 상환은 교비회계로 상환하며, 다만, 송도캠퍼스 자체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원리금 전액 또는 부족분을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법인회계에서 보전하게 됨을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함.
- 김종철 의장 : 임원들이 숙의한 후, 심의안건 제3호에 대하여 원안을 승인하겠음을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하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채 승인 내역

(가) 기채한도액 : 금12,585,000,000원(일백이십오억팔천오백만원)

(단, 금융기관 여신심사 용자비율결과에 따라 총 기채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나) 기채처 : 금융기관

간인(서명)	김종철	서명	
--------	-----	----	---

(다) 금리(이율) : 연5.67%(변동이율, '24년 11월 18일 우리은행 이자율 기준)

(라) 기채기간 : 차입일로부터 10년(2년거치 8년 분할상환)

(마) 담보 : 담보제공 없음

(바) 용도 : 송도캠퍼스(가칭) 2단계 교사 건축공사비

(사) 상환회계 : 교비회계(단, 송도캠퍼스 자체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원리금 전액 또는 부족분을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법인회계에서 보전)

(4)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 김종철 의장 : 제4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최형용 기획조정처장 : 직제규정 개정사항으로 재무·대외부총장 명칭을 대외 부총장으로 변경하고, 재정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편제 변경, 미네르바 교양대학을 개편하여 미네르바대학으로 명칭 변경하고 산하에 자유전공학부(서울, 글로벌), 교양교육연구센터, 외국어교육센터, 기초교육센터, 인성교육센터를 배속하고자 하며, 명예특임교수 보직발령 예외규정 신설, 연구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윤리센터 신설 등 직제개편 내용을 설명함.
- 김종철 의장 : 임원들이 숙의한 후, 심의안건 제4호의 원안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직제규정 개정 승인사항

- 승인여부 : 원안 의결
- 시 행 일 : 2025년 3월 1일

* 붙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규정 신·구 대비표

(5)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

- 김종철 의장 : 제5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최형용 기획조정처장 :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재무·대외부총장 명칭 변경, 재정위원회 개편, 미네르바교양대학 개편, 보직 직급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등의 직제개편 사항을 학교법인 정관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 개정 내용>

- 재무·대외부총장 역할 조정 및 '대외부총장'으로의 명칭 변경(안 제90조

간인(서명)	김종철	최형용	
--------	-----	-----	---

제3항, 제4항, 제5항)

- 재정위원회 편제 변경(안 제92조 제1항)
- 미네르바 교양대학을 '미네르바대학'으로 개편 및 외국어교육센터 편제 변경(안 제91조 제7항, 제92조 제8항)
- 보직 직급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안 제95조)

○ 김종철 의장 : 임원들이 숙의한 후, 심의안건 제5호의 원안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정관 개정 승인사항

- 승인여부 : 원안 의결
- 시 행 일 : 2025년 2월 13일부터 시행. 다만, 제90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대외부총장 명칭 변경, 제91조 제7항, 제92조 제8항의 미네르바대학 개편 및 외국어교육센터 편제 변경, 제92조 제1항의 재정위원회 편제 변경, 제95조의 보직 직급 기준에 대한 예외사항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

* 붙임 :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신·구대비표

(6)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김종철 의장 : 제6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 요청함.
- 문휘창 이사 : 인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특성화트랙 1명(2순위), HK 교원 1명(1순위)에 대한 신규임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다만 2순위 임용 제청 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하였음.
는 지난 이사회 당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상태였는데, 최종 출판이 확인되어 승진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정교수 승진을 승인하였음.
- 유덕근 교무처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제1학기 신규임용 2명(특성화, HK 각1명), 승진임용 1명에 대한 임용사항을 각각 보고함. 이와 관련 인사소위원회에서 지적한 자유전공학부 2순위 임용사유에 대하여 총장 면접에서 뛰어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고, 학생지도에 적합한 상담심리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학생지도 및 상담과 관련한

간인(서명)	김종철	유덕근	
--------	-----	-----	---

연구논문을 해외 저명 학술지에 다수 발표하는 등의 사유로 2순위를 제청 하였음을 보고함.

- 김종철 의장 : 임원들이 숙의한 후, 심의안건 제6호의 원안 승인을 문자, 참석이사 7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가) 신규임용

교원 구분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용일	비고

(나) 승진임용

소속	성명	승진 직위	승진조건 충족여부	승진일	비고

(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충원 계획(안)

- 김종철 의장 : 제7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문휘창 이사 : 인사소위원회에서 2025학년도 제2학기 교원 충원 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학교에서 제출한 내국인 24명(정년 21명, 특성화 3명), 외국인 교체충원 13명에 대한 충원 인원을 모두 승인하였으며, 다만,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의 채용 분야 “AI & 미디어”에 대한 구체적 채용 필요성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공계열의 경우, 우수 인재 확보난으로 교수 충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 차원의 대응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함.
- 유덕근 서울교무처장 :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정년퇴직에 따른 교원 수급, 신설학과 교원 확보 등의 사유로 2025학년도 제2학기에 내국인 정년트랙 21명, 특성화트랙 3명, 외국인 교체충원 13명의 충원계획을 확정하고자 함.

간인(서명)	김종철	이재우	
--------	-----	-----	---

아울러, 인사위원회에서 요구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의 “AI & 미디어” 분야에 배정한 사유에 대하여,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뉴스 및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교육과 연구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생성형 AI를 포함한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AI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및 사회적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가 필요하여 배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함.

○ 이어 임원들이 다음과 같이 토의함.

- 베트남어과에 외국인교원 1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배정하였는데, 현재 베트남어과는 내국인교원이 1명밖에 없어 학생지도 및 학과 운영에 어려움 있는 상황이므로 외국인교원보다는 내국인교원의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베트남어과와 협의 후 배정된 외국인교원 1명을 내국인교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총장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함.
- 베트남어과 등 일부 학과는 내국인교원 소수에 나머지는 외국인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방학 기간에 국내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학과 운영, 학생지도 등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현재 베트남어과에 내국인교원이 1명밖에 없으므로 외국인교원보다는 내국인교원을 충원하자는 의견에 동의함.

○ 김종철 의장 :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심의안건 제7호는 원안대로 승인하되, 베트남어과에 배정된 외국인교원 1명은 내국인교원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총장에게 위임하겠음을 문자, 이에 대해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하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충원 계획 승인사항

(가) 승인 여부 : 원안 의결

(나) 충원 인원(학과별 인원은 불임 참조)

- 내국인 : 총 24명(정년 21명, 특성화 3명)
- 외국인 : 총 13명(교체 13명)

간인(서명)	김종철	박재민	
--------	-----	-----	---

(다) 부가조건 : 베트남어과에 배정된 외국인 1명을 내국인으로 변경하여 충원할 수 있는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함.

(라) 총원 예정시기 : 2025학년도 제2학기

* 붙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총원 계획 승인 내역

(8) 한국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안)

- 김종철 의장 : 제8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유덕근 서울교무처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승진·승급 및 재임용규정 개정(안) 등 6건의 규정 개정 사항을 각각 보고함.
- (가) 교원 승진·승급 및 재임용 규정 개정(안) : 국제저명전문학술지(A&HCI, SSCI, SCIE, SCOPUS) 등급 세분화, 산학협력 실적 인정범위 확대, BK21 CS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SCI급 인정, 수학, 통계, 산업경영공학 분야 SCIE 실적 가중치 적용 기준 변경, 재임용, 승진임용, 정교수 승급, 고속승진 등에 대한 연구업적 기준 상향, 국제저명전문학술지 실적물(게재예정) 1년 유예 제도 폐지 등
- (나) HK교원 승진·승급 및 재임용 규정 개정(안) : 국제저명전문학술지(A&HCI, SSCI, SCIE, SCOPUS) 등급 세분화, 승진 및 재임용, 정교수 승급 기준 상향 등
- (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연구중심교수 재임용 심사 기준 변경, 학생지도중심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신설 등
- (라) 외국인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재임용 기준 변경(학과평가표), 강의평가 항목 배점 하향 조정(40점→30점), 학생지도 항목 배점 상향 조정(30점→40점), 복무태도 불량 및 학사행정 미협조 시 감점 강화, 총점 기준 외에 평가항목별 점수 기준도 충족해야 재임용 가능하도록 변경, 연구실적 미충족 시 재임용 기준 보완, 승진 기준 보완, 다년계약 기준 수립, 연구실적 승인 절차 변경 등
- (마) 복무규정 개정(안) : 직제개편 등에 따른 보직 개편, 학생지도중심교수 제도 신설 등의 사항을 강의시수 기준표에 반영 등

간인(서명)	김종철	유덕근	
--------	-----	-----	---

(바) 보수규정 개정(안) : 2024년 임금협약 사항(봉급 3%인상, 급양비 5천원 인상 등) 반영, 특성화트랙 학생지도중심교수 트랙 신설, 직제개편에 따른 교양교 육연구센터장, 기초교육센터장, 연구윤리센터장 보직수당 반영 등

○ 문휘창 이사 : 인사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학교에서 제출한 규정 개정 사항을 모두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음. 다만, 신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문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으며, 또한, 외국인 교원 재임용의 경우에 연구실적 미충족시 강의로 대체하여 재임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는데, 원칙적으로 강의, 연구는 상호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므로 추후 개선을 요구했음을 보고함.

○ 이어 임원들이 다음과 같이 토의함

- 신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신임 교원은 2025.03.01.일부터 변경된 규정을 바로 적용하고, 재직교원의 경우 재임용은 1회 유예, 승진은 2년 유예, 승급은 2025.03.01. 정교수 승진자부터 적용하도록 했음. 현재 재직중인 정교수에게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에 따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적 문제로 정교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규정 개정의 취지 및 방향은 학교 발전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교수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함. 정교수 중 많은 인원이 논문을 쓰지 않는 현실에서 논문을 많이 발표하면 포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교원에게는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개정된 신규정이 바로 적용되면 좋겠음. 학교측에서 제출한 개정 사항 중 재직중인 정교수를 제외하는 부분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정교수 중 논문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학교와 비교하면 정교수 전체의 논문 실적은 적지 않은 수준임. 재직 중인 정교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정교수 이외 다른 부분도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교수를 제외한 점은 양해바람. 종전 규정에도 정교수 일지라도 논문을 쓰지 않으면 승급 제외, 안

간인(서명)

김정현



식년 제외, 학술대회 제외 등 여러 불이익이 있으며, 또한, 새로운 규정을 정교수에게 바로 적용한다고 해도 당사자가 승급을 포기하면 실제 내용이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승급이 아닌 승진과 재임용에 관한 내용까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승진과 재임용은 재계약에 해당하므로 승진과 재임용이 있으면 당연히 그때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규정을 개정할 때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하에 경과규정을 둘 수 있는데, 그 기준에 비추어보면 개정안의 내용은 연구력 강화보다 교수들의 기존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외국인 교원의 경우 연구업적이 없을 때는 강의로 대체하여 재임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하지만, 강의는 시간만 투입하면 성취할 수 있는데 연구는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업적을 강의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임. 학교측 사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더라도 추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김종철 의장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심의안건 제8호의 승인 여부를 묻자, 다음과 같이 규정 개정 6건을 각각 승인·의결하다.

□ 규정 개정 승인사항

(가) 승진·승급 및 재임용규정 개정(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투표결과 : 참석이사 7명 중 6명 찬성, 1명 반대(양인집 이사)

(나) HK교원 승진·승급 및 재임용 규정 개정(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투표결과 : 참석이사 7명 중 6명 찬성, 1명 반대(양인집 이사)

(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투표결과 : 참석이사 7명 중 7명 전원 찬성

(라) 외국인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투표결과 : 참석이사 7명 중 7명 전원 찬성

간인(서명)

김종철

양인집



(마) 복무규정 개정(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투표결과 : 참석이사 7명 중 7명 전원 찬성

(바) 보수규정 개정(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투표결과 : 참석이사 7명 중 7명 전원 찬성

* 불임 : 교원 승진·승급 및 재임용 규정 신·구 대비표,
HK교원 승진·승급 및 재임용규정 신·구 대비표,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표,
외국인교원인사규정 신·구 대비표,
복무규정 신·구 대비표,
보수규정 신·구 대비표.

(9)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김종철 의장 : 제9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 요청함.
- 박헌일 교무처장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제2학기 교원 임용 사항으로 정년트랙 1명(영어학부), 특성화트랙 3명(영어학부 2명, 한국어학부 1명)을 2025.03.01.자로 신규임용 하고자 함.
- 김종철 의장 : 임원들이 숙의한 후, 심의안건 제9호를 학교 원안과 같이 승인하겠음을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 찬성으로 승인·의결하다.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임용구분	교원종류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간인(서명)	김종철	박헌일	
--------	-----	-----	---

(10)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충원 계획(안)

- 김종철 의장 : 제10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박헌일 교무처장 : 일본어과 소속 교원 1명이 정년퇴직 예정임에 따라, 후임 정년트랙 1명의 충원이 필요하며, 스페인어과 외국인교원 1명은 교육 및 학생 관리 등을 위해서 교체 충원을 진행하고자 함.
- 김종철 의장 : 임원들이 숙의한 후, 심의안건 제10호의 원안 승인을 묻자, 이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충원 계획 승인 내역

교원 구분	학부	충원 사항		초빙 분야	임용 예정 시기	비고
		충원 구분	인원			
정년트랙	일본어학부	교체충원	1명	일본어문학 (일본문화 포함)	2025학년도 제2학기	
외국인 전임교원	스페인어학부	교체충원	1명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2025학년도 제2학기	

(11)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안)

- 김종철 의장 : 제11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박헌일 교무처장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복무규정 개정(안), 보수규정 개정(안) 등 규정 개정 2건에 대해 보고함.
 - (가) 복무규정 개정(안) : 일반대학원 신설에 따른 대학원 주임교수 보직사항을 강의 시수 기준표에 추가
 - (나) 보수규정 개정(안) : 기본급 3.5% 인상, 급양비 2만원 인상, 대학원 주임교수 보직수당 신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폐지 등 반영
- 김종철 의장 : 임원들이 숙의한 후, 심의안건 제11호의 원안 승인을 묻자, 다음과 같이 각각 승인·의결하다.

□ 규정 개정 승인사항

(가) 복무규정 개정(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간인(서명)	김종철	박헌일	
--------	-----	-----	---

- 투표결과 : 참석이사 7명 중 7명 전원 찬성

(나) 보수규정 개정(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투표결과 : 참석이사 7명 중 7명 전원 찬성

* 불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복무규정 신·구 대비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보수규정 신·구 대비표

(12)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교원 임용(안)

- 김종철 의장 : 제12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 요청함.
- 박인호 교감 :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의 2025학년도 제1학기 교원 임용사항으로 신규임용 3명(수학, 물리, 지구과학 각 1명), 명예퇴직 1명(국어 1명), 의원면직 2명(수학 2명), 파견 2명(역사, 일본어 각1명)의 임용사항을 각각 보고함. 당초 신규임용은 4명을 채용 예정이었으나, 국어교과 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하여 3명을 임용 제청하게 되었으며, 대체 교원은 기간제 교사로 채용 예정임을 보고함.
- 김종철 의장 : 임원들이 숙의한 후, 심의안건 제12의 원안 승인을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교원 임용 승인 사항

- 승인 여부 : 원안 승인
- 승인 인원 : 신규임용 3명, 명예퇴직 1명, 의원면직 2명, 파견 2명
- 임용 명단 : 불임 참조

* 불임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교원 임용 명단

(13)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202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김종철 의장 : 제13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박정식 처장 :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50백만원 감액된 28,120,000,520원으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식	
--------	-----	-----	---

<주요 편성내역>

- 교육청/지자체 지원금 396,898천원 증액(지원금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분 반영)
- 등록금수입 28,000천원 증액(실 등록금 수입분 반영)
- 수익자부담경비 558,000천원 감액(급식비 및 기숙사비 등 규모 조정)
- 행정활동수입 16,898천원 감액(겨울캠프 취소분 및 예금수입 증대분 반영 등)

- 김종철 의장 :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심의안건 제13호의 원안 승인을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 의결하다.

□ 202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승인내역

(금액단위 : 원)

기관명	2024회계연도 제2차 추경예산 총액	승인 여부	비고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28,120,000,520	원안 승인	

(14)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처분(안)

- 김종철 의장 : 제14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박정식 재무처장 : 학교법인은 2025년 자금예산 편성 시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전출금 예산액 26.5억원(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액 20억원 포함)을 반영한 바 있음. 이에 따른 전출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정기예금 20억원을 처분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법정부담금으로 전출하고자 함.
- 김종철 의장 : 임원들이 숙의한 후, 심의안건 제14호의 원안 승인을 묻자, 이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불임 : 수익용기본재산(예금) 처분 승인사항

(15)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 김종철 의장 : 제15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회 회의록 서명의 간소화를 위해 간서명 대상자로 김종철 이사장, 박정운 이사, 배한영 감사를 선임하겠음을 발의하자, 참석이사 7인 전원 찬성으로 승인·의결하다.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운	배한영
--------	-----	-----	-----

○ 이어 김종철 의장이 2025년 제1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5년 2월 13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김 종 철

(서명) 김종철

이 사 김 동 건

(서명) 김동건

이 사 김 호 정

(서명) 김호정

이 사 문 휘 창

(서명) 문휘창

이 사 박 정 운

(서명) 박정운

이 사 양 인 집

(서명) 양인집

이 사 이 돈 구

(서명) 이돈구

이 사 최 맹 호

(불참)

감 사 배 한 영

(서명) 배한영

감 사 장 혜 운

(서명) 장혜운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운	
--------	-----	-----	---

(붙임)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3조 (조직) 본 대학교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조직) 본 대학교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변경
제5조 (구성) ① 본 대학교에 총장, 서울캠퍼스 부총장,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재무·대외부총장, 산학연계 부총장과 서울 및 글로벌캠퍼스에 대학본부를 둔다. ② 총장직속기관으로 기획조정처, 비서실, 홍보실, 정보처, 입학처, 지식출판콘텐츠원, 교육혁신원, 미래위원회, 감사위원회, 건설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인권센터, AI교육원,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을 두되 교원양성위원회 산하에 교직부를 배속한다. ③ 재무·대외부총장 산하에 국제교류처, 대외협력처, 재정위원회를 둔다. ④~⑤ (생략)	제5조 (구성) ① 본 대학교에 총장, 서울캠퍼스 부총장,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대외부총장 , 산학연계부총장과 서울 및 글로벌캠퍼스에 대학본부를 둔다. ② 총장직속기관으로 기획조정처, 비서실, 홍보실, 정보처, 입학처, 지식출판콘텐츠원, 교육혁신원, 미래위원회, 감사위원회, 재정위원회 , 건설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인권센터, AI교육원,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을 두되 교원양성위원회 산하에 교직부를 배속한다. ③ 대외부총장 산하에 국제교류처, 대외협력처를 둔다. ④~⑤ (현행과 같음)	명칭 변경 편제 변경
제6조 (서울캠퍼스) ①~② (생략) ③ 대학에 <u>미네르바 교양대학</u> ,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중국학대학, 일본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AI융합대학, 국제학부,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Trade학부, KFL학부, 자유전공학부(서울)를 둔다. ④ (생략)	제6조 (서울캠퍼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학에 미네르바대학 ,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중국학대학, 일본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AI융합대학, 국제학부,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Trade학부, KFL학부를 둔다. ④ (현행과 같음)	명칭 변경 편제 이동에 따른 자구 삭제
제7조 (글로벌캠퍼스) ①~② (생략) ③ 대학에 <u>미네르바 교양대학</u> , 인문대학, 통번역대학, 국가전략언어대학, 경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융합인재대학, Culture & Technology융합대학, AI융합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자유전공학부(글로벌), 기후변화융합학부를 둔다. ④ (생략)	제7조 (글로벌캠퍼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학에 미네르바대학 , 인문대학, 통번역대학, 국가전략언어대학, 경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융합인재대학, Culture & Technology융합대학, AI융합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기후변화융합학부를 둔다. ④ (현행과 같음)	명칭 변경 편제 이동에 따른 자구 삭제

간인(서명)

김정철

홍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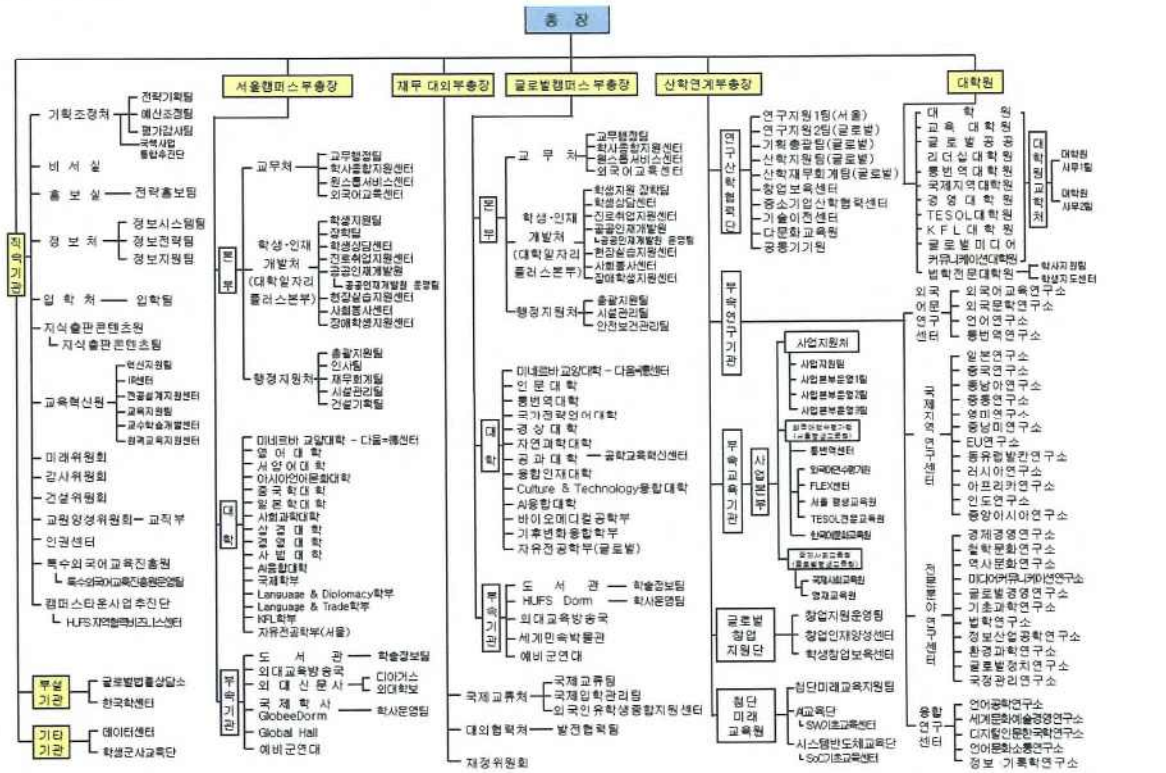
제9조 (대학, 대학원의 학과(부)와 편성) 각 대학의 학과(부)와 대학원의 과정 및 학과의 편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제9조 (대학, 대학원의 학과(부)와 편성) ① 각 대학의 학과(부)와 대학원의 과정 및 학과의 편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u>미네르바대학, AI융합대학은 캠퍼스 통합 단과대학으로 양 캠퍼스 학과(부)를 모두 둘 수 있으며, 미네르바대학 산하에는 교양교육연구센터, 외국어교육센터, 기초교육센터, 인성교육센터를 둔다.</u>	항 신설
제14조 (연구산학협력단) ① (생략) ② 연구산학협력단에는 연구지원1팀, 연구지원2팀, 기획총괄팀, 산학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이전센터, 다문화교육원, 공동기기원을 둔다.	제14조 (연구산학협력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산학협력단에는 연구지원1팀, 연구지원2팀, 기획총괄팀, 산학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이전센터, 다문화교육원, 공동기기원, <u>연구윤리센터</u> 를 둔다.	직제 신설
제16조 (교무처) ① 서울캠퍼스 교무처에 교무행정팀, 학사종합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센터, <u>외국어교육센터</u> 를 둔다. ②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에 교무행정팀, 학사종합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센터, <u>외국어교육센터</u> 를 둔다.	제16조 (교무처) ① 서울캠퍼스 교무처에 교무행정팀, 학사종합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센터를 둔다. ②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에 교무행정팀, 학사종합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센터를 둔다.	편제 이동
제34조 (부총장) ① (생략) ② <u>재무.대외부총장</u> 은 국제교류처 및 대외협력처 운영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③ (생략) ④ 총장의 유고시에는 서울캠퍼스 부총장,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u>재무.대외부총장</u> , 산학연계부총장, 대학원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부총장) ① (현행과 같음) ② <u>대외부총장</u> 은 국제교류처 및 대외협력처 운영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총장의 유고시에는 서울캠퍼스 부총장,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u>대외부총장</u> , 산학연계부총장, 대학원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명칭 변경
제35조 (직위) ① 각 처, 대학, 대학원 및 기타 행정조직에 다음 각 호의 장을 둔다. 1. (생략) 2. 대학 : 학장, 부학장 및 학과(부)장 또는 전공·모듈주임교수. 다만, <u>미네르바 교양대학</u> 에는 교양주임교수와 센터장을 둘 수 있다.	제35조 (직위) ① 각 처, 대학, 대학원 및 기타 행정조직에 다음 각 호의 장을 둔다. 1. (현행과 같음) 2. 대학 : 학장, 부학장 및 학과(부)장 또는 전공·모듈주임교수. 다만, <u>미네르바대학</u> 에는 <u>학부장</u> , 교양주임교수, 센터장을 둘 수 있다.	학제 개편사항 반영

간인(서명)	김정철	이재우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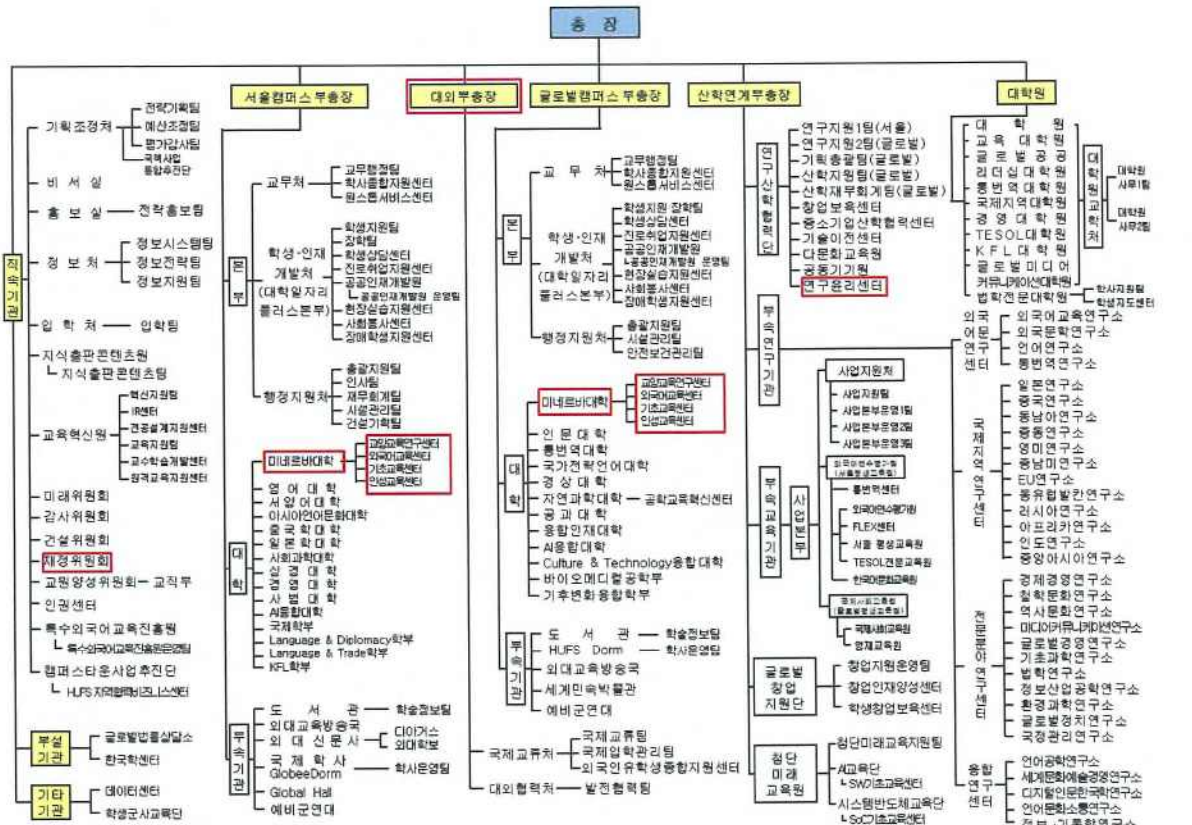
3 ~ 6 (생략) 7. 연구산학협력단 : 단장, 부단장 ㉓~㉕ (생략) (신설) 8 ~ 9 (생략) (신설) 10 ~ 48 (생략) ② 1. 전항 제1호 내지 제36호는 조교수(예비 군연대는 예외로 한다) 이상으로 보하되, 제1 호 각 처장(기획조정처장, 행정지원처장, 대외 협력처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제2호 학 장, 제3호 대학원장, 교학처장, 제4호 도서관 장, 세계민속박물관장, 제5호 사업본부장, 사업 지원처장, 원장(영재교육원은 예외로 한다), 센 터장, 제7호 연구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 제9 호 미래위원회 위원장, 제13호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원장, 제15호 교육혁신원장, 제16호 첨단 미래교육원장, 제18호 글로벌창업지원단장, 제 20호 AI교육단장, 제21호 시스템반도체교육단 장, 제33호 인권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 하며, 제37호 내지 제45호는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 2 ~ 3 (생략) 4. 진로취업지원센터, 공공인재개발원 운영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 데이터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또 는 원장을 보좌하는 팀장을 둔다. (신설)	3 ~ 6 (현행과 같음) 7. 연구산학협력단 : 단장, 부단장 ㉓~㉕ (현행과 같음) ㉖ 연구윤리센터 : 센터장 8 ~ 9 (현행과 같음) 10. 교양교육연구센터 : 센터장 11. 기초교육센터 : 센터장 12. 인성교육센터 : 센터장 13 ~ 51 (현행과 같음) ② 1. 전항 제1호 내지 제39호는 조교수(예비 군연대는 예외로 한다) 이상으로 보하되, 제1 호 각 처장(기획조정처장, 행정지원처장, 대외 협력처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제2호 학 장, 제3호 대학원장, 교학처장, 제4호 도서관 장, 세계민속박물관장, 제5호 사업본부장, 사업 지원처장, 원장(영재교육원은 예외로 한다), 센 터장, 제7호 연구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 제9 호 미래위원회 위원장, 제16호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원장, 제18호 교육혁신원장, 제19호 첨단 미래교육원장, 제21호 글로벌창업지원단장, 제 23호 AI교육단장, 제24호 시스템반도체교육단 장, 제36호 인권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 하며, 제40호 내지 제48호는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연구윤리센터, 진로취업지원센터, 공공인재 개발원 운영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외국인유학 생종합지원센터, 데이터센터, 장애학생지원센 터에는 센터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는 팀장을 둔다. 5.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총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특임교수를 예외로 보할 수 있다.	보직 신설 항 순연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직 신설 호 신설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간인(서명)	김경철	서재승	
--------	-----	-----	---

■ <별표1> 현행



■ <별표1> 개정(안)



※ 미네르바대학, 서울합대: 캠퍼스 통합 단과대학

간인(서명)

김정철

박재근



(붙임)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개정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조~제89조(생략)	제1조~제89조(현행과 같음)	
제90조 (총장 등) ①~② (생략) ③대학교에 서울캠퍼스 부총장,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u>재무·대외부총장</u> , 산학연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④양 캠퍼스 부총장은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는 서울캠퍼스 부총장,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u>재무·대외부총장</u> , 산학연계부총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u>재무·대외부총장은 재무, 국제교류, 발전기금 모금 등 재정 및 대외협력에</u>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⑥ (생략)	제90조 (총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대학교에 서울캠퍼스 부총장,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u>대외부총장</u> , 산학연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④양 캠퍼스 부총장은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는 서울캠퍼스 부총장,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u>대외부총장</u> , 산학연계부총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u>대외부총장은 국제교류, 발전기금 모금 등 대외협력에</u>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⑥ (현행과 같음)	보직 명칭 및 역할 변경
제91조 (학장, 대학원장 등) ①~⑥ (생략) (신설)	제91조 (학장, 대학원장 등) ①~⑥ (현행과 같음) <u>⑦미네르바대학에는 학부장, 교양주임교수,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u>	직제 개편
제92조 (하부조직) ①대학교 양 캠퍼스에 교무처,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행정지원처를 두고 서울캠퍼스에 기획조정처, 국제교류처, 대외협력처, 입학처, 정보처, 지식출판콘텐츠원, 교육혁신원, 미래위원회, 감사위원회, 건설위원회, 재정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인권센터 및 캠퍼스 타운사업추진단을 두되 교원양성위원회 산하에 교직부를 <u>배속하며, 재정위원회는 재무·대외부총장 산하에 둔다.</u> ②~⑦ (생략) ⑧서울캠퍼스 교무처에는 교무행정팀, 학사종합지원센터, <u>원스톱서비스센터, 외국어교육센터</u> 를 둔다. 입학처에 입학팀을 두고,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에는 교무행정팀, 학사종합지원센터, <u>원스톱서비스센터, 외국어교육센터</u> 를 둔다. <u>외국어교육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각 팀</u>	제92조 (하부조직) ①대학교 양 캠퍼스에 교무처,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행정지원처를 두고 서울캠퍼스에 기획조정처, 국제교류처, 대외협력처, 입학처, 정보처, 지식출판콘텐츠원, 교육혁신원, 미래위원회, 감사위원회, 건설위원회, 재정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인권센터 및 캠퍼스 타운사업추진단을 두되 교원양성위원회 산하에 교직부를 <u>배속한다.</u> ②~⑦ (현행과 같음) ⑧서울캠퍼스 교무처에는 교무행정팀, 학사종합지원센터, <u>원스톱서비스센터</u> 를 둔다. 입학처에 입학팀을 두고,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에는 교무행정팀, 학사종합지원센터, <u>원스톱서비스센터</u> 를 둔다. 각 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	편제 변경에 따른 자구 삭제

간인(서명)

김동철

이재민



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 ⑨~㉓ (생략)	⑨~㉓ (현행과 같음)	
제92조의 2~제94조의 5 (생략)	제92조의 2~제94조의 5 (현행과 같음)	
<u>제95조</u> (도서관) ①~② (생략)	<u>제94조의 6</u> (도서관) ①~② (현행과 같음)	조 수정
(신설)	<u>제95조 (보직 직급기준에 대한 예외) 제92조 내 지 제94조의 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 별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특임교수 를 예외로 보할 수 있다.</u>	조 신설
제96조~제132조 (생략)	제96조~제132조 (현행과 같음)	
	<u>부 칙</u>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2월 13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90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대 외부총장 명칭 변경, 제91조 제7항, 제92조 제 8항의 미네르바대학 개편 및 외국어교육센터 편제 변경, 제92조 제1항의 재정위원회 편제 변경, 제95조의 보직 직급기준에 대한 예외사항 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간인(서명)	김동철	김민우	
--------	-----	-----	---

(붙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충원 계획 승인 내역

1. 기존 학과 배정 인원

구분	학과(부)		내국인		외국인		비고
			정년	특성화	교체	순증	
서울 (학부)	네덜란드어과		1		1		
	스칸디나비아어과				1		
	베트남어과				1		베트남어과는 배정된 외국인 1명을 내국인 1명으로 변경하여 충원 가능
	인도어과				1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어과				1		
	중국어언어문화학부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				
	경제학부		1				
	경영학부		1				
	사범대학 외국어교육학부 (독일어교육전공)		1				
	Language & Trade학부		1				
글로벌 (학부)	태국어통번역학과				1		
	루마니아학과				1		
	체코·슬로바키아학과				1		
	헝가리학과				1		
	아프리카학부				1		
	우크라이나학과			1			
	국제금융학과		1				
	환경학과		1				
	생명공학과		1				
	컴퓨터공학부		2				
	반도체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1				
	산업경영공학과		1				
	바이오메디컬공학부		1				
	자유전공학부(글로벌)			1			
대학원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1		1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1			
	TESOL 대학원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1		

2. 신설 학과 배정 인원

구분	학과(부)	내국인		외국인		비고
		정년	특성화	교체	순증	
서울 (학부)	Language & AI융합학부	2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1				
글로벌 (학부)	반도체전자공학부(반도체공학전공)	2				
	Finance & AI융합학부	1				

간인(서명)	김정철	박정호	
--------	-----	-----	---

(붙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승진·승급 및 재임용 규정 개정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3조 (승진 및 재임용 절차) ① ~ ② (생략) ③학과장은 연구실적 및 학과 발전기여도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단, 학과장 본인이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 대상인 경우, 의견서 작성은 아래의 순서에 의해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 중 1인이 작성하고, 학과장 본인은 의견서의 <u>학과교수서명</u>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속 학과 내국인 교수 2. 부학장 3. 대학(원)장 4. <u>해당 캠퍼스 교양대학장</u> ④ ~ ⑤ (생략)	제3조 (승진 및 재임용 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학과장은 연구실적 및 학과 발전기여도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단, 학과장 본인이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 대상인 경우, 의견서 작성은 아래의 순서에 의해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 중 1인이 작성하고, 학과장 본인은 의견서의 <u>학과 교수 서명</u>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속 학과 내국인 교수 2. 부학장 3. 대학(원)장 4. <u>(삭제)</u> ④ ~ ⑤ (현행과 같음)	교양대학 삭제
제4조 (심사기준) ①승진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별표 1>, <별표1-1>과 같다. ②재임용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별표2>, — <별표 2-1>와 같다. ③ ~ ④ (생략)	제4조 (심사기준) ①승진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별표 1>, <별표1-1>과 같다. ②재임용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별표2>, — <별표 2-1>과 같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승진 재임용 등 심사기준 변경
제5조 (승급) ① ~ ③ (생략) ④승급심사기준은 <별표3>, <별표3-1>과 같다.	제5조 (승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승급심사기준은 <별표3>, <별표3-1>과 같다.	승급 심사기준 변경
	부 칙(2025.2.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적용) 이 규정 개정 시행 전 재직 중인 교원의 2027.2.28. 이전 승진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2027.3.1. 이후 승진은 <별표1>의 2025.3.1. 이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27.3.1. 이후 승진하는 교원의 승진 심사기간이 본 경과조치 기간에 포함될 경우,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을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③ (적용) 이 규정 개정 시행 전 재직 중인 교원의 2027.2.28. 이전 고속승진, 조기정년보장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2027.3.1. 이후 고속승진, 조기정년보장은 <별표1-1> 및 <별표2-1>의 2025.3.1. 이후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적용) 이 규정 개정 시행 전 재직 중인 교원의 2025.2.28. 이후 처음 도래하는 재임용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재임용부터 <별표2>의 2025.3.1. 이후 기준을 적용한다. ⑤ (적용) 이 규정 개정 시행 전 재직 중인 교수의 승급, 추가승급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2025.3.1. 교수 승진자부터 <별표3>, <별표3-1>의 2025.3.1. 이후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신설

간인(서명)

김정철

이재은



현 행					개 정	비 고																				
<별표 1> □ 승진 심사기준 (2011.2.28.까지)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조교수 승진</th><th>부교수 승진</th><th>교수 승진</th></tr><tr><td colspan="2">승진 소요년수</td><td>2 년</td><td>4 년</td><td>5 년</td></tr><tr><td rowspan="2">연구 점수</td><td>법학.인문.상경.사회계</td><td colspan="3">연 240점 × 직급별 재직 기간</td></tr><tr><td>이 공 계</td><td colspan="3">연 240점 × 직급별 재직 기간</td></tr></table> ○ 법학.인문.상경.사회계 교원은 재임기간 중 연간 학진등재(후보)지 이상 120점과 국제일반학술지 1편 이상 있어야 한다. ○ 이공계 교원은 재임기간 중 연간 학진등재(후보)지 이상 120점과 연간 국제저명 학술지(SCI급) 0.35편 (70점) 또는 공저 연 1편 이상 있어야 한다. ※ 1. 국제일반학술지 1편(법학/인문/상경/사회계) 및 연간 국제저명학술지(SCI급) 0.35편 또는 공저 연 1편(이공계) 요건은 부교수 및 정교수 승진에만 적용함. 2. 국제일반학술지 이외 외국단행본, 외국단행본의 chapter, 국제학술발표대회 후 선별되어 단행본 형태로 발행된 논문, 외국대학(연구소) 논문도 국제일반학술지급으로 인정한다. 3. 국제일반학술지 논문 게재(법학/인문/상경/사회계) 대신에 국제학술발표대회 1편 발표(2인 공동발표까지 인정 : 70점) 및 학진등재지 1편(120점)으로 대체 가능함. 단, 인문계열은 상기 대체의 경우 외에 학진등재지 2편(240점)으로도 대체 가능함. ○ 게재예정 연구물은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승진임용일 이전에 학술지에 게재된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구 분		조교수 승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승진 소요년수		2 년	4 년	5 년	연구 점수	법학.인문.상경.사회계	연 240점 × 직급별 재직 기간			이 공 계	연 240점 × 직급별 재직 기간			<별표 1> □ 승진 심사기준 (2011.2.28.까지) (삭제)		<별표 1> 승진 심사기준(2011.2. 28. 까지) 삭제
구 분		조교수 승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승진 소요년수		2 년	4 년	5 년																						
연구 점수	법학.인문.상경.사회계	연 240점 × 직급별 재직 기간																								
	이 공 계	연 240점 × 직급별 재직 기간																								
특기 사항																										
※ 국제저명 전문학술지 SCI, SSCI, A&HCI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전공)는 해당 학과로부터 3개의 학술지를 추천받아 심사 후 결정된 학술지를 포함한다.																										

간인(서명)	김정철	학 자 인	
--------	-----	-------	---

현행	개정	비고															
	<별표 1> ☐ 승진 심사기준 (2025.3.1. 이후) ① 인문계 (논문편수는 인정비율기준)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부교수 승진</th><th>교수 승진</th></tr> <tr> <td>승진 소요년수</td><td>6년</td><td>5년</td></tr> <tr> <td>연구점수</td><td colspan="2">연 240점 × 직급별 재직기간</td></tr> <tr> <td>필수연구업적</td><td>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조교수 최초임용 5, 6호급은 A&HCI 1.2편 또는 SCOPUS 2.0편, 4호급 이상은 A&HCI 0.8편 또는 SCOPUS 1.3편 포함] </td><td>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A&HCI 1.0편 또는 SCOPUS 1.7편 포함] </td></tr> <tr> <td colspan="3">필수연구업적 중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필수</td></tr> </table>	구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승진 소요년수	6년	5년	연구점수	연 240점 × 직급별 재직기간		필수연구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조교수 최초임용 5, 6호급은 A&HCI 1.2편 또는 SCOPUS 2.0편, 4호급 이상은 A&HCI 0.8편 또는 SCOPUS 1.3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A&HCI 1.0편 또는 SCOPUS 1.7편 포함]	필수연구업적 중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필수			<별표 1> 승진 심사기준(2025.3. 1. 이후) 신설
구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승진 소요년수	6년	5년															
연구점수	연 240점 × 직급별 재직기간																
필수연구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조교수 최초임용 5, 6호급은 A&HCI 1.2편 또는 SCOPUS 2.0편, 4호급 이상은 A&HCI 0.8편 또는 SCOPUS 1.3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A&HCI 1.0편 또는 SCOPUS 1.7편 포함]															
필수연구업적 중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필수																	
(신설)																	
	② 사회·상경계 (논문편수는 인정비율기준)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부교수 승진</th><th>교수 승진</th></tr> <tr> <td>승진 소요년수</td><td>6년</td><td>5년</td></tr> <tr> <td>연구점수</td><td colspan="2">연 240점 × 직급별 재직기간</td></tr> <tr> <td>필수연구업적</td><td>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조교수 최초임용 5, 6호급은 SSCI 1.5편 또는 SCOPUS 2.5편, 4호급 이상은 SSCI 1.0편 또는 SCOPUS 1.7편 포함] </td><td>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SSCI 1.3편 또는 SCOPUS 2.2편 포함] </td></tr> <tr> <td colspan="3">필수연구업적 중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필수</td></tr> </table>	구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승진 소요년수	6년	5년	연구점수	연 240점 × 직급별 재직기간		필수연구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조교수 최초임용 5, 6호급은 SSCI 1.5편 또는 SCOPUS 2.5편, 4호급 이상은 SSCI 1.0편 또는 SCOPUS 1.7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SSCI 1.3편 또는 SCOPUS 2.2편 포함]	필수연구업적 중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필수			<별표 1> 승진 심사기준(2025.3. 1. 이후) 신설
구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승진 소요년수	6년	5년															
연구점수	연 240점 × 직급별 재직기간																
필수연구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조교수 최초임용 5, 6호급은 SSCI 1.5편 또는 SCOPUS 2.5편, 4호급 이상은 SSCI 1.0편 또는 SCOPUS 1.7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SSCI 1.3편 또는 SCOPUS 2.2편 포함]															
필수연구업적 중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필수																	
(신설)																	

간인(서명)

김정호

2022



현행	개정	비고	
(신설)	③ 법학계 (논문편수는 인정비율기준)	<별표 1> 승진 심사기준(2025.3. 1. 이후) 신설	
	구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승진 소요년수	6년	5년
	연구점수	연 240점 × 직급별 재직기간	
	필수연구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조교수 최초임용 5, 6호급은 A&HCI 1.2편 또는 SCOPUS 2.0편, 4호급 이상은 A&HCI 0.8편 또는 SCOPUS 1.3편 포함] 필수연구업적 중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필수 *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의 경우 SCI급 논문 미충족시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300점'으로 필수연구업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수는 필수연구업적을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으로 한다.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A&HCI 1.0편 또는 SCOPUS 1.7편 포함]
(신설)	④ 이공계 (논문편수는 인정비율기준)	<별표 1> 승진 심사기준(2025.3. 1. 이후) 신설	
	구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승진 소요년수	6년	5년
	연구점수	연 240점 × 직급별 재직기간	
	필수연구업적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SCIE 조교수 최초임용 5, 6호급은 7.8편, 4호급 이상은 5.2편 필수연구업적에 대하여 다음 중 택1 필수 [선택1] 총 4건 이상 주저자 참여 [선택2] 논문 제출 편수의 1/2 이상 주저자 참여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SCIE 6.5편

간인(서명)

김동원



현행	개정	비고
	◎ 특기사항 * 필수연구업적 요건의 '주저자'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를 의미한다. * 공동연구는 인정비용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추가 가산한다. 다만, IF Top 10% 저널은 주저자인 경우 공저자수와 무관하게 최소 50%(자연과학대학 실험학과(전자물리학과, 환경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소속 교원의 경우에는 70%) 참여율을 적용한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SCOPUS 제외) 교차 게재시, 계열별 국제저명전문학술지 논문 요구량 대비 백분율(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로 인정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수학·통계학과(수학교육전공 포함) SCIE 실적은 1.5배(150%) 가중치를 적용한다. 단, 가중치는 JCR 카테고리 K1~K4(자연과학)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산업경영공학과 SCIE 실적은 1.3배(130%)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가중치는 JCR 카테고리 K1~K4(자연과학)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부여하는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A&HCI Top 40% 1.3배, 기타 1배 - SSCI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기타 0.75배 - SCIE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기타 0.75배 - SCOPUS 0.6배 - SCI급 저널 Top%는 미국 Thomson社 Clarivate가 1년마다 발표하는 Impact Factor의 상위%로, 논문이 게재된 당해연도를 평가한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점수와 승진 심사점수는 상이할 수 있음) * 국제저명전문학술지는 A&HCI, SSCI, SCIE, SCOPUS(Article, Article-in Press, Review 형식의 Document Type만 인정)를 의미하며, SCOPUS 인정 편수는 Article을 기준으로 하고 Article Type의 A&HCI Review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정으로 산정한다. Article 외 Document Type의 A&HCI와, Article, Review(Review Paper) 외 Document Type의 SSCI, SCIE의 인정 편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하며 해당 게재지의 Impact Factor와 무관하게 500점:120점 배점 비율을 따른다. * 이공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이 BK21사업의 일환으로 지정한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필수연구업적으로 인정하되, SCOPUS에 색인된 경우에 한하여 SCIE Top 70% 수준으로 인정한다. * 저·역서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 상의 국제학술저서(전문·일반), 국내학술저서, 전문분야별역사를 의미한다. *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이란 국제저명전문학술지, 국외일반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를 의미한다. * 게재가 확정된 연구물은 공식적인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 다만, 승진임용일 이전에 학술지에 게재된 최종 연구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의 경우는 승진 임용일 전에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승진임용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연구실적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승진 임용일에 소급하여 승진에 좌소됨. 단, 본 조항은 2020-9-1자 승진임용자까지만 적용한다.(개정 2019-11-29) * 전 계열, 공통 연구점수를 산학협력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연구점수는 연 360점 X 직급별 재직기간임(필수 연구업적 기준 없음) - 산학협력 실적으로 국제/국내 특허·SW 등록, 연구비 수혜액(산업체 연구비 수혜만 인정 지원기관 무관, R&D 과제에 한함), 기술이전 실적만 인정함 - 국제/국내 특허·SW 등록, 연구비 수혜액은 총 연구점수의 50%까지 합산 가능함 - 연구점수를 산학협력 실적으로 대체할 시 산학협력 실적 외 연구업적 점수 합산 불가함	<별표 1> 승진 심사기준(2025.3. 1. 이후) 특기사항 신설

현행	개정	비고																				
	<별표 1-1> ☐ 고속승진 심사기준 (2025.3.1. 이후) 단위: 편(인정비율기준) <table><tr><th>구분</th><th>인문계 A&HCI</th><th>사회·법학·상경계 SSCI</th><th>자연과학계 SCIE</th><th>공학계 SCIE</th></tr><tr><td>교수 ↑</td><td>3.3</td><td>3.9</td><td>10.4</td><td>9.1</td></tr><tr><td>부교수 ↑</td><td>3.9</td><td>4.9</td><td>14.3</td><td>11.7</td></tr><tr><td>조교수</td><td></td><td></td><td></td><td></td></tr></table>	구분	인문계 A&HCI	사회·법학·상경계 SSCI	자연과학계 SCIE	공학계 SCIE	교수 ↑	3.3	3.9	10.4	9.1	부교수 ↑	3.9	4.9	14.3	11.7	조교수					<별표 1-1> 고속승진 심사기준(2025.3. 1. 이후) 신설
구분	인문계 A&HCI	사회·법학·상경계 SSCI	자연과학계 SCIE	공학계 SCIE																		
교수 ↑	3.3	3.9	10.4	9.1																		
부교수 ↑	3.9	4.9	14.3	11.7																		
조교수																						
(신설)	<특기사항> * 수학·통계학과(수학교육전공 포함) SCIE 실적은 1.5배(150%) 가중치를 적용하며, 산업경영공학과 SCIE 실적은 1.3배(130%)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가중치는 JCR 카테고리상 해당 키워드(분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안의 수치는 Top 10% 저널의 편수 - Top 10% 저널은 미국 Thomson 社가 1년마다 발표하는 Impact Factor의 상위 10%의 학술지이며, 당해연도를 평가한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함 * 자연과학계 및 공학계는 SCIE에 등재된 학술지로 전공분야별 JCR 단일주제별 Impact Factor(IF) 상위 40%(수학·통계학과(수학교육전공 포함), 산업경영공학과는 상위 60%) 이내에 해당하는 학술지만 인정한다. * 인문, 사회, 법학, 상경계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로서 전공분야별 JCR 단일주제별 Impact Factor(IF) 상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학술지만 인정한다. * 고속 승진 자격취득 연수는 해당 직위 재직소요 연수 50% 도래 시점임. * 공동연구는 인정비율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추가 가산한다. 다만, IF Top 10% 저널은 주저자인 경우 공저자수와 무관하게 최소 50%(자연과학대학 실험학과(전자물리학과, 환경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소속 교원의 경우에는 70%) 참여율을 적용한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교차 게재시, 계열별 논문 국제저명전문학술지 논문 요구량 대비 백분율(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로 인정한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와 TOP 10% 학술지는 1 : 1.5 비율로 계상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부여하는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A&HCI Top 40% 1.3배, 기타 1배 - SSCI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 SCIE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 SCI급 저널 Top%는 미국 Thomson社 Clarivate가 1년마다 발표하는 Impact Factor의 상위%로, 논문이 게재된 당해연도를 평가한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점수와 고속승진 심사점수는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편수는 본교 재임기간 중 게재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Article 외 Document Type의 A&HCI와, Article, Review(Review Paper) 외 Document Type의 SSCI, SCIE의 인정 편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하며 해당 게재지의 Impact Factor와 무관하게 500점:120점 배점 비율을 따른다.	<별표 1-1> 고속승진 심사기준(2025.3. 1. 이후) 특기사항 신설																				



7.2 조경
학 자 인

간인(서명)

현 행			개정	비고
<별표 2> ☐ 재임용 심사기준 (2011.2.28.까지)				
구 분	기간			
재임용	4년 이내			
연구 점수	연 240점 × 계약기간			
특기	○ 법학·인문·상경·사회계 교원은 재임기간 중 연간 학진등재(후보)지 이상 120점과 국제일반학술지 1편 이상 있어야 한다. ○ 이공계 교원은 재임기간 중 연간 학진등재(후보)지 이상 120점과 연간 국제저명 학술지(SCI급) 0.35편 (70점) 또는 공저 연 1편 이상 있어야 한다. ※ 1. 국제일반학술지 1편(법학/인문/상경/사회계) 및 연간 국제저명학술지(SCI급) 0.35편 또는 공저 연 1편(이공계) 요건은 신규임용 후 최초 재임용에는 적용하지 않음. 2. 국제일반학술지 이외 외국단행본, 외국단행본의 chapter, 국제학술발표대회 후 선별되어 단행본 형태로 발행된 논문, 외국대학(연구소) 논문도 국제일반학술지급으로 인정한다. 3. 국제일반학술지 논문 게재(법학/인문/상경/사회계) 대신에 국제학술발표대회 1편 발표(2인 공동발표까지 인정 : 70점) 및 학진등재지 1편(120점)으로 대체 가능함. 단, 인문계열은 상기 대체의 경우 외에 학진등재지 2편(240점)으로도 대체 가능함.			
사항	○ 게재예정 연구물은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재임용일 이전에 학술지에 게재된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국제저명 전문학술지 SCI, SSCI, A&HCI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전공)는 해당 학과로부터 3개의 학술지를 추천받아 심사 후 결정된 학술지를 포함한다.				

※ 국제저명 전문학술지 SCI, SSCI, A&HCI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전공)는 해당 학과로부터 3개의 학술지를 추천받아 심사 후 결정된 학술지를 포함한다.

현행	개정	비고															
	<별표 2> ☐ 재임용 심사기준 (2025.3.1. 이후) ① 인문계 (논문편수는 인정비율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조교수 재임용</th><th>부교수 재임용</th></tr> </thead> <tbody> <tr> <td>재임용 소요기간</td><td>최초임용 3~4년(본인 선택), 이후 4년</td><td></td></tr> <tr> <td>연구점수</td><td>연 240점 × 계약기간</td><td></td></tr> <tr> <td>필수 연구 업적</td><td>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최초임용 3년은 A&HCI 0.3편 또는 SCOPUS 0.5편, 최초임용 4년은 A&HCI 0.4편 또는 SCOPUS 0.7편, 이후 4년은 A&HCI 0.6편 또는 SCOPUS 1.0편 포함] </td><td>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A&HCI 0.8편 또는 SCOPUS 1.3편 포함] </td></tr> <tr> <td> * 신임교원의 최초 재임용은 재임용 전까지 본인이 'SCI급 논문 미충족시' 대체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앙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여부를 결정한다. </td><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40점</td><td></td></tr> </tbody> </table>	구분	조교수 재임용	부교수 재임용	재임용 소요기간	최초임용 3~4년(본인 선택), 이후 4년		연구점수	연 240점 × 계약기간		필수 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최초임용 3년은 A&HCI 0.3편 또는 SCOPUS 0.5편, 최초임용 4년은 A&HCI 0.4편 또는 SCOPUS 0.7편, 이후 4년은 A&HCI 0.6편 또는 SCOPUS 1.0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A&HCI 0.8편 또는 SCOPUS 1.3편 포함]	* 신임교원의 최초 재임용은 재임용 전까지 본인이 'SCI급 논문 미충족시' 대체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앙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여부를 결정한다.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40점		<별표 2> 재임용 심사기준(2025.3.1. 이후) 신설
구분	조교수 재임용	부교수 재임용															
재임용 소요기간	최초임용 3~4년(본인 선택), 이후 4년																
연구점수	연 240점 × 계약기간																
필수 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최초임용 3년은 A&HCI 0.3편 또는 SCOPUS 0.5편, 최초임용 4년은 A&HCI 0.4편 또는 SCOPUS 0.7편, 이후 4년은 A&HCI 0.6편 또는 SCOPUS 1.0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A&HCI 0.8편 또는 SCOPUS 1.3편 포함]															
* 신임교원의 최초 재임용은 재임용 전까지 본인이 'SCI급 논문 미충족시' 대체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앙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여부를 결정한다.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40점																
(신 설)	② 사회·상경계 (논문편수는 인정비율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조교수 재임용</th><th>부교수 재임용</th></tr> </thead> <tbody> <tr> <td>재임용 소요기간</td><td>최초임용 3~4년(본인 선택), 이후 4년</td><td></td></tr> <tr> <td>연구점수</td><td>연 240점 × 계약기간</td><td></td></tr> <tr> <td>필수 연구 업적</td><td>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최초임용 3년은 SSCI 0.4편 또는 SCOPUS 0.7편, 최초임용 4년은 SSCI 0.5편 또는 SCOPUS 0.8편, 이후 4년은 SSCI 0.8편 또는 SCOPUS 1.3편 포함] </td><td>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SSCI 1.0편 또는 SCOPUS 1.7편 포함] </td></tr> <tr> <td> * 신임교원의 최초 재임용을 위한 필수연구업적은 'SCI급 논문 충족시' 기준만 인정한다.(최초 재임용은 대체 불가) </td><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40점</td><td></td></tr> </tbody> </table>	구분	조교수 재임용	부교수 재임용	재임용 소요기간	최초임용 3~4년(본인 선택), 이후 4년		연구점수	연 240점 × 계약기간		필수 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최초임용 3년은 SSCI 0.4편 또는 SCOPUS 0.7편, 최초임용 4년은 SSCI 0.5편 또는 SCOPUS 0.8편, 이후 4년은 SSCI 0.8편 또는 SCOPUS 1.3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SSCI 1.0편 또는 SCOPUS 1.7편 포함]	* 신임교원의 최초 재임용을 위한 필수연구업적은 'SCI급 논문 충족시' 기준만 인정한다.(최초 재임용은 대체 불가)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40점		<별표 2> 재임용 심사기준(2025.3.1. 이후) 신설
구분	조교수 재임용	부교수 재임용															
재임용 소요기간	최초임용 3~4년(본인 선택), 이후 4년																
연구점수	연 240점 × 계약기간																
필수 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최초임용 3년은 SSCI 0.4편 또는 SCOPUS 0.7편, 최초임용 4년은 SSCI 0.5편 또는 SCOPUS 0.8편, 이후 4년은 SSCI 0.8편 또는 SCOPUS 1.3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SSCI 1.0편 또는 SCOPUS 1.7편 포함]															
* 신임교원의 최초 재임용을 위한 필수연구업적은 'SCI급 논문 충족시' 기준만 인정한다.(최초 재임용은 대체 불가)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40점																

현행	개정	비고														
(신설)	③ 법학계 (논문편수는 인정비율기준) <table><tr><th>구분</th><th>조교수 재임용</th><th>부교수 재임용</th></tr><tr><td>재임용 소요기간</td><td colspan="2">최초임용 3~4년(본인 선택), 이후 4년</td></tr><tr><td>연구점수</td><td colspan="2">연 240점 × 계약기간</td></tr><tr><td rowspan="2">필수 연구 업적</td><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최초임용 3년은 SSCI 0.3편 또는 SCOPUS 0.5편, 최초임용 4년은 SSCI 0.4편 또는 SCOPUS 0.7편, 이후 4년은 SSCI 0.6편 또는 SCOPUS 1.0편 포함]</td><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SSCI 0.8편 또는 SCOPUS 1.3편 포함]</td></tr><tr><td>SCI급 논문 충족시</td><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40점</td></tr></table> *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수는 필수연구업적을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으로 한다. * 신임교원의 최초 재임용은 재임용 전까지 본인이 'SCI급 논문 미충족시' 대체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앙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여부를 결정한다.	구분	조교수 재임용	부교수 재임용	재임용 소요기간	최초임용 3~4년(본인 선택), 이후 4년		연구점수	연 240점 × 계약기간		필수 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최초임용 3년은 SSCI 0.3편 또는 SCOPUS 0.5편, 최초임용 4년은 SSCI 0.4편 또는 SCOPUS 0.7편, 이후 4년은 SSCI 0.6편 또는 SCOPUS 1.0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SSCI 0.8편 또는 SCOPUS 1.3편 포함]	SCI급 논문 충족시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40점	<별표 2> 재임용 심사기준(2025.3.1. 이후) 신설
	구분	조교수 재임용	부교수 재임용													
재임용 소요기간	최초임용 3~4년(본인 선택), 이후 4년															
연구점수	연 240점 × 계약기간															
필수 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최초임용 3년은 SSCI 0.3편 또는 SCOPUS 0.5편, 최초임용 4년은 SSCI 0.4편 또는 SCOPUS 0.7편, 이후 4년은 SSCI 0.6편 또는 SCOPUS 1.0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SSCI 0.8편 또는 SCOPUS 1.3편 포함]														
	SCI급 논문 충족시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40점														
(신설)	④ 이공계 (논문편수는 인정비율기준) <table><tr><th>구분</th><th>조교수 재임용</th><th>부교수 재임용</th></tr><tr><td>재임용 소요기간</td><td colspan="2">최초임용 3~4년(본인 선택), 이후 4년</td></tr><tr><td>연구점수</td><td colspan="2">연 240점 × 계약기간</td></tr><tr><td>필수연구업적</td><td>해당직급 재임기간중 SCIE 최초임용 3년은 1.6편, 4년은 2.1편, 이후 4년은 3.1편</td><td>해당직급 재임기간중 SCIE 3.1편</td></tr></table>	구분	조교수 재임용	부교수 재임용	재임용 소요기간	최초임용 3~4년(본인 선택), 이후 4년		연구점수	연 240점 × 계약기간		필수연구업적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SCIE 최초임용 3년은 1.6편, 4년은 2.1편, 이후 4년은 3.1편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SCIE 3.1편	<별표 2> 재임용 심사기준(2025.3.1. 이후) 신설		
	구분	조교수 재임용	부교수 재임용													
재임용 소요기간	최초임용 3~4년(본인 선택), 이후 4년															
연구점수	연 240점 × 계약기간															
필수연구업적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SCIE 최초임용 3년은 1.6편, 4년은 2.1편, 이후 4년은 3.1편	해당직급 재임기간중 SCIE 3.1편														

현행	개정	비고
	◎ 특기사항 * 공동연구는 인정비율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추가 가산한다. 다만, IF Top 10% 저널은 주저자인 경우 공저자수와 무관하게 최소 50%(자연과학대학 실험학과(전자물리학과, 환경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소속 교원의 경우에는 70%) 참여율을 적용한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SCOPUS 제외) 교차 게재시, 계열별 국제저명전문학술지 논문 요구량 대비 백분율(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로 인정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수학·통계학과(수학교육전공 포함) SCIE 실적은 1.5배(150%)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가중치는 JCR 카테고리상 해당 키워드(분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산업경영공학과 SCIE 실적은 1.3배(130%)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가중치는 JCR 카테고리상 해당 키워드(분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부여하는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A&HCI Top 40% 1.3배, 기타 1배 - SSCI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기타 0.75배 - SCIE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기타 0.75배 - SCOPUS 0.6배 - SCI급 저널 Top%는 미국 Thomson社 Clarivate가 1년마다 발표하는 Impact Factor의 상위%로, 논문이 게재된 당해연도를 평가한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교원영역평가 점수와 재임용 심사점수는 상이할 수 있음) * 국제저명전문학술지는 A&HCI, SSCI, SCIE, SCOPUS(Article, Article-in Press, Review 형식의 Document Type만 인정)를 의미하며, SCOPUS 인정 편수는 Article을 기준으로 하고 Article-in Press, Review는 교원영역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한다. Article 외 Document Type의 A&HCI와, Article, Review(Paper) 외 Document Type의 SSCI, SCIE의 인정 편수는 교원영역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하며 해당 게재지의 Impact Factor와 무관하게 50점:120점 배점 비율을 따른다. * 이공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이 BK21사업의 일환으로 지정한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필수연구업적으로 인정하되, SCOPUS에 색인된 경우에 한하여 SCIE Top 70% 수준으로 인정한다. *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이란 국제저명전문학술지, 국외일반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를 의미한다. * 게재가 확정된 연구물은 공식적인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 다만, 재임용일 이전에 학술지에 게재된 최종 연구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국제저명학술지의 경우는 재임용일 전에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재임용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연구실적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재임용일에 소급하여 재임용이 취소된다. 다만, 본 조항 개정 시행 전 재직중인 교원의 경우 2025년 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재임용 심사 1회에 한하여 본 조항을 적용하고, 이후 재임용 심사에서는 계약만료일까지 최종연구물을 제출해야 한다. * 전 계열, 공통 연구점수를 산학협력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연구점수는 연 360점 × 지급별 재직기간인(필수 연구업적 기준 없음) - 산학협력 실적으로 국제/국내 특허·SW 등록, 연구비 수혜액(산업체 연구비 수혜만 인정 지원지관 무관, R&D 과제에 한함). 기술이전 실적만 인정함 - 국제/국내 특허·SW 등록, 연구비 수혜액은 총 연구점수의 50%까지 합산 가능함 - 연구점수를 산학협력 실적으로 대체할 시 산학협력 실적 외 연구업적 점수 합산 불가함	<별표 2> 재임용 심사기준(2025.3.1. 이후) 특기사항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2-1> □ 조기 정년보장 심사기준 (2025.3.1. 이후) 단위: 편(인정비율기준) <table><tr><th>구분</th><th>인문계 A&HCI</th><th>사회·법학·상경제 SSCI</th><th>자연과학계 SCIE</th><th>공학계 SCIE</th></tr><tr><td>부교수 재임 실적</td><td>3.3</td><td>3.9</td><td>10.4</td><td>9.1</td></tr><tr><td>조교수 재임 실적</td><td>4.6</td><td>5.9</td><td>16.9</td><td>14.3</td></tr><tr><td>재임 총실적</td><td>6.5</td><td>7.2</td><td>20.8</td><td>17.6</td></tr></table>	구분	인문계 A&HCI	사회·법학·상경제 SSCI	자연과학계 SCIE	공학계 SCIE	부교수 재임 실적	3.3	3.9	10.4	9.1	조교수 재임 실적	4.6	5.9	16.9	14.3	재임 총실적	6.5	7.2	20.8	17.6	<별표 2-1> 조기 정년보장 심사기준(2025.3. 1. 이후) 신설
구분	인문계 A&HCI	사회·법학·상경제 SSCI	자연과학계 SCIE	공학계 SCIE																		
부교수 재임 실적	3.3	3.9	10.4	9.1																		
조교수 재임 실적	4.6	5.9	16.9	14.3																		
재임 총실적	6.5	7.2	20.8	17.6																		
(신 설)	<특기사항> * 수학·통계학과(수학교육전공 포함) SCIE 실적은 1.5배(150%) 가중치를 적용하며, 산업경영공학과 SCIE 실적은 1.3배(130%) 가중치를 적용한다. 단, 가중치는 JCR 카테고리상 해당 키워드(분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안의 수치는 Top 10% 저널의 편수 - Top 10% 저널은 미국 Thomson 社가 1년마다 발표하는 Impact Factor의 상위 10%의 학술지이며, 당해연도를 평가한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함 * 자연과학계 및 공학계는 SCIE에 등재된 학술지별 JCR 단일주제별 Impact Factor(IF) 상위 40%(수학·통계학과(수학교육전공 포함), 산업경영공학과는 상위 60%) 이내에 해당하는 학술지만 인정한다. * 인문, 사회, 법학, 상경제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로 전공분야별 JCR 단일주제별 Impact Factor(IF) 상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학술지만 인정한다. * 공동연구는 인정비율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추가 가산한다. 다만, IF Top 10% 저널은 주저자인 경우 공저자수와 무관하게 최소 50%(자연과학대학 실험학과(전자물리학과, 환경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소속 교원의 경우에는 70%) 참여율을 적용한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교차 게재시, 계열별 논문 국제저명전문학술지 논문 요구량 대비 백분율(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로 인정한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와 TOP 10% 학술지는 1 : 1.5 비율로 계상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부여하는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A&HCI Top 40% 1.3배, 기타 1배 - SSCI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 SCIE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 SCI급 저널 Top%는 미국 Thomson社 Clarivate가 1년마다 발표하는 Impact Factor의 상위%로, 논문이 게재된 당해연도를 평가한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점수와 조기정년보장 심사점수는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편수는 본교 재임기간 중 게재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Article 외 Document Type의 A&HCI와, Article, Review(Paper) 외 Document Type의 SSCI, SCIE의 인정 편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하며 해당 게재지의 Impact Factor와 무관하게 500점:120점 배점 비율을 따른다.	<별표 2-1> 조기 정년보장 심사기준(2025.3. 1. 이후) 특기사항 신설																				

현 행	개정(안)	비고								
<별표 3> ☐ 승급 심사기준 (2011.2.28.까지) <table><tr><th>승급 호봉</th><th>승급 기준</th></tr><tr><td>정교수 10호급</td><td>120점(학진 등재지 또는 학진등재후보지 이상 60점 포함)이상</td></tr><tr><td>9호급부터 7호급까지</td><td>240점(학진등재지 또는 학진등재후보지 이상 120점 포함) 이상</td></tr><tr><td>6호급부터 1호급까지</td><td>200점 이상</td></tr></table> ※ 정교수가 <별표1-2> 기준을 충족할 경우 1호봉 추가 승급할 수 있다. (추가 호봉승급은 1년간 학기당 2학점 기본시수차감으로 대체 가능)	승급 호봉	승급 기준	정교수 10호급	120점(학진 등재지 또는 학진등재후보지 이상 60점 포함)이상	9호급부터 7호급까지	240점(학진등재지 또는 학진등재후보지 이상 120점 포함) 이상	6호급부터 1호급까지	200점 이상	<별표 3> ☐ 승급 심사기준 (2011.2.28.까지) (삭제)	<별표 3> 승급 심사기준(2011.2. 28. 까지) 삭제
승급 호봉	승급 기준									
정교수 10호급	120점(학진 등재지 또는 학진등재후보지 이상 60점 포함)이상									
9호급부터 7호급까지	240점(학진등재지 또는 학진등재후보지 이상 120점 포함) 이상									
6호급부터 1호급까지	200점 이상									

간인(서명)	김동철	김 동 철	
--------	-----	-------	---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별표 3> ☐ 승급 심사기준 (2025.3.1. 이후) <table><tr><th>승급 호봉</th><th colspan="2">승급 기준</th></tr><tr><td>교수 10호급</td><td colspan="2">[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18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td></tr><tr><td rowspan="3">교수 9호급부터 6호급까지</td><td>인문·법학계</td><td>[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36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 다만, 9호급 또는 8호급 승급 중 1회에 대해서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함</td></tr><tr><td>사회·상경계</td><td>[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36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 다만, 9호급 또는 8호급 승급 중 1회 및 7호급 또는 6호급 승급 중 1회에 대해서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함</td></tr><tr><td>이공계</td><td>[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360점 다만,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 포함</td></tr><tr><td>교수 5호급부터 1호급까지</td><td colspan="2">[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24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td></tr></table>	승급 호봉	승급 기준		교수 10호급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18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		교수 9호급부터 6호급까지	인문·법학계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36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 다만, 9호급 또는 8호급 승급 중 1회에 대해서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함	사회·상경계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36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 다만, 9호급 또는 8호급 승급 중 1회 및 7호급 또는 6호급 승급 중 1회에 대해서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함	이공계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360점 다만,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 포함	교수 5호급부터 1호급까지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24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		<별표 3> 승급 심사기준(2025.3. 1. 이후) 신설
	승급 호봉	승급 기준																
교수 10호급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18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																	
교수 9호급부터 6호급까지	인문·법학계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36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 다만, 9호급 또는 8호급 승급 중 1회에 대해서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함																
	사회·상경계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36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 다만, 9호급 또는 8호급 승급 중 1회 및 7호급 또는 6호급 승급 중 1회에 대해서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함																
	이공계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360점 다만,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 포함																
교수 5호급부터 1호급까지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24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																	
(신설)	<특기사항> *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이란 국제저명전문학술지, 국외일반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와 국제학술저서(전문·일반), 국내학술저서, 사전, 전문분야 번역서를 의미한다. * 산학협력 실적은 국제/국내 특허·SW 등록, 연구비 수혜(산업체 연구비 수혜만 인정 지원기관 무관, R&D 과제에 한함), 기술이전 실적을 의미한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는 A&HCI, SSCI, SCIE, SCOPUS(Article, Article-in Press, Review 형식의 Document Type만 인정)를 의미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의 경우 교수 9호급부터 6호급까지 승급 심사기준을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36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이상'으로 한다. * 만 62세가 되는 시점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승급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면제한다.	<별표 3> 승급 심사기준(2025.3. 1. 이후) 특기사항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별표 3-1> ☐ 정교수 추가승급 심사기준 (2025.3.1. 이후) 단위: 편(인정비율기준) <table><tr><th>구분</th><th>인문계 A&HCI 혹은 SCOPUS</th><th>사회·법학·상경제 SSCI 혹은 SCOPUS</th><th>자연과학계 SCIE 혹은 SCOPUS</th><th>공학계 SCIE 혹은 SCOPUS</th></tr><tr><td>1호봉 추가 승급을 위한 정교수 연구실적기준</td><td>1.3</td><td>2.6</td><td>5.2</td><td>3.9</td></tr></table>	구분	인문계 A&HCI 혹은 SCOPUS	사회·법학·상경제 SSCI 혹은 SCOPUS	자연과학계 SCIE 혹은 SCOPUS	공학계 SCIE 혹은 SCOPUS	1호봉 추가 승급을 위한 정교수 연구실적기준	1.3	2.6	5.2	3.9	<별표 3-1> 정교수 추가승급 심사기준(2025.3. 1. 이후) 신설
구분	인문계 A&HCI 혹은 SCOPUS	사회·법학·상경제 SSCI 혹은 SCOPUS	자연과학계 SCIE 혹은 SCOPUS	공학계 SCIE 혹은 SCOPUS								
1호봉 추가 승급을 위한 정교수 연구실적기준	1.3	2.6	5.2	3.9								
(신설)	<특기사항> * 추가승급 연한을 2년마다 한다. * 추가승급 연구실적 인정기간은 최근 4년 이내로 한다. * 자연과학계 및 공학계는 SCIE에 등재된 학술지로 전공분야별 JCR 단일주제별 Impact Factor(IF) 상위 40%(수학·통계학과(수학교육전공 포함), 산업경영공학과는 상위 60%) 이내에 해당하는 학술지만 인정한다. * 인문, 사회, 법학, 상경제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로 전공분야별 JCR 단일주제별 Impact Factor(IF) 상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학술지만 인정한다. * SCOPUS는 Article, Article-in-Press 형식의 Document Type만 인정한다. * 수학·통계학과(수학교육전공 포함) SCIE 실적은 1.5배(150%) 가중치를 적용하며, 산업경영공학과 SCIE 실적은 1.3배(130%)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가중치는 JCR 카테고리상 해당 키워드(분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안의 수치는 Top 10% 저널의 편수 - Top 10% 저널은 미국 Thomson사가 1년마다 발표하는 Impact Factor의 상위 10%의 학술지이며, 당해연도를 평가한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 전연도를 기준으로 함 * 공동연구는 인정비율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추가 가산한다. 다만, IF Top 10% 저널은 주저자인 경우 공저자수와 무관하게 최소 50%(자연과학대학 실험학과(전자물리학과, 환경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소속 교원의 경우에는 70%) 참여율을 적용한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교차 게재시, 계열별 논문 국제저명전문학술지 논문 요구량 대비 백분율(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로 인정한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와 TOP 10% 학술지는 1:1.5 비율로 계상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부여하는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A&HCI Top 40% 1.3배, 기타 1배 - SSCI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 SCIE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 SCI급 저널 Top%는 미국 Thomson社 Clarivate가 1년마다 발표하는 Impact Factor의 상위%로, 논문이 게재된 당해연도를 평가한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 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점수와 추가승급 심사점수는 상이할 수 있음)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Article 외 Document Type의 A&HCI와, Article, Review(Review Paper) 외 Document Type의 SSCI, SCIE의 인정 편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하며 해당 게재지의 Impact Factor와 무관하게 500점:120점 배점 비율을 따른다.	<별표 3-1> 정교수 추가승급 심사기준(2025.3. 1. 이후) 특기사항 신설										

(붙임)

한국외국어대학교 HK교원 승진·승급 및 재임용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5조 (심사기준) ① 승진 심사기준은 <별표 1>, <별표1-1>과 같다. ②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 2>, <별표2-1>과 같다. ③ ~ ⑤ (생략)	제5조 (심사기준) ① 승진 심사기준은 <별표 1>, <별표1-1>과 같다. ②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 2>, <별표2-1>과 같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수정
제8조 (승급) ① ~ ② (생략) ③ HK교수 승급 심사기준은 <별표 4>, <별표 4-1>과 같다.	제8조 (승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HK교수 승급 심사기준은 <별표 4>, <별표 4-1>과 같다.	별표 수정
	<u>부 칙(2025.2.13)</u>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적용) 이 규정 개정 시행 전 재직 중인 교원의 2027.2.28. 이전 승진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2027.3.1. 이후 승진은 <별표1>, <별표1-1>의 2025.3.1.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27.3.1. 이후 승진하는 교원의 승진 심사기간이 본 경과조치 기간에 포함될 경우,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을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3) (적용) 이 규정 개정 시행 전 재직 중인 교원의 2025.2.28. 이후 처음 도래하는 재임용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재임용부터 <별표2>, <별표2-1>의 2025.3.1.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4) (적용) 이 규정 개정 시행 전 재직 중인 교수 승급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2025.3.1. 교수 승진자부터 <별표4>, <별표4-1>의 2025.3.1.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신설

간인(서명)

김정철

김재은



현행	개정	비고
	<별표 1> 승진 심사기준 □ 승진 심사기준 (2018. 8. 31. 까지) (2025.3.1. 개정) (논문 편수는 인정비를 기준)	
구분 승진 소요년수 연구 점수	HK부교수 승진 6년 연 360점 × 직급별 재직기간	HK교수 승진 5년
(신 설) 특기사항	○ HK부교수 승진 시에는 연간 국제저명전문학술지 0.25편(SCOPUS의 경우 연간 0.42편) 포함 연간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 1.55편 이상이 있어야 한다. ○ HK교수 승진 시에는 연간 국제저명전문학술지 0.2편(SCOPUS의 경우 연간 0.34편) 포함 연간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 1.5편 이상이 있어야 한다. ○ HK부교수 및 HK교수 승진 시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필수 ○ '주저자'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를 의미한다. ○ 공동연구는 인정비율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추가 가산한다. 다만, IF Top 10% 저널은 주저자인 경우 공저자수와 무관하게 최소 50% 참여율을 적용한다. ○ 게재예정 연구물은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승진임용일 이전에 학술지에 게재된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국제저명전문학술지의 경우 승진임용일 전에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승진임용일 후 1년 이내에 해당 연구실적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여야 함. 단, 본 조항은 2020.9.1.자 승진임용자까지만 적용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부여하는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A&HCI Top 40% 1.3배, 기타 1배 - SSCI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기타 0.75배 - SCIE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기타 0.75배 - SCOPUS 0.6배 - SCI급 저널 Top%는 미국 Thomson社 Clarivate가 1년마다 발표하는 Impact Factor의 상위%로, 논문이 게재된 당해연도를 평가한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점수와 승진 심사점수는 상이할 수 있음) ○ 국제저명전문학술지는 A&HCI, SSCI, SCOPUS(Article, Article-in Press, Review 형식의 Document Type만 인정)를 의미하며, SCOPUS 인정 편수는 Article을 기준으로 하고 Article-in Press, Review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한다. Article 외 Document Type의 A&HCI와, Article, Review(Review Paper) 외 Document Type의 SSCI의 인정 편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하며 해당 게재지의 Impact Factor와 무관하게 500점:120점 배점 비율을 따른다.	<별표 1> 승진 심사기준 변경

현행	개정(안)	비고														
	☐ 승진 심사기준 (2018. 9. 1. 이후) (2025.3.1. 개정) (논문 편수는 인정비를 기준)															
(신 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HK부교수 승진</th> <th>HK교수 승진</th> </tr> </thead> <tbody> <tr> <td>승진 초요년수</td> <td>6년</td> <td>5년</td> </tr> <tr> <td>연구점수</td> <td colspan="2">연 360점 × 직급별 재직기간</td> </tr> <tr> <td rowspan="2">필수연구업 적</td> <td>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55편 [단.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5편(SCIE의 경우 7.8편, SCOPUS의 경우 2.5편) 포함] </td> <td>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5편 [단.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A&HCI 1.0편 또는 SSCI 1.3편 또는 SCIE 6.5편 또는 SCOPUS 2.2편 포함] </td> </tr> <tr> <td colspan="2"> * 인문/사회/상경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필수 * 이공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에 대하여 다음 중 택1 필수 [선택1] 총 4건 이상 주저자 참여 [선택2] 논문 제출 편수의 1/2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td> </tr> </tbody> </table>	구분	HK부교수 승진	HK교수 승진	승진 초요년수	6년	5년	연구점수	연 360점 × 직급별 재직기간		필수연구업 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55편 [단.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5편(SCIE의 경우 7.8편, SCOPUS의 경우 2.5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5편 [단.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A&HCI 1.0편 또는 SSCI 1.3편 또는 SCIE 6.5편 또는 SCOPUS 2.2편 포함]	* 인문/사회/상경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필수 * 이공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에 대하여 다음 중 택1 필수 [선택1] 총 4건 이상 주저자 참여 [선택2] 논문 제출 편수의 1/2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별표 1> 승진 심사기준 변경
구분	HK부교수 승진	HK교수 승진														
승진 초요년수	6년	5년														
연구점수	연 360점 × 직급별 재직기간															
필수연구업 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55편 [단.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5편(SCIE의 경우 7.8편, SCOPUS의 경우 2.5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5편 [단.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A&HCI 1.0편 또는 SSCI 1.3편 또는 SCIE 6.5편 또는 SCOPUS 2.2편 포함]														
	* 인문/사회/상경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필수 * 이공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에 대하여 다음 중 택1 필수 [선택1] 총 4건 이상 주저자 참여 [선택2] 논문 제출 편수의 1/2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간인(서명)	김정철	인	인
--------	-----	---	---

현행	개정	비고
	◎ 특기사항 (2025.3.1. 개정) ※ 필수연구업적 요건의 '주저자'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를 의미한다. ※ 공동연구는 인정비용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추가 가산한다. 다만, IF Top 10% 저널은 주저자인 경우 공저자수와 무관하게 최소 50% 참여율을 적용한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SCOPUS 제외) 교차 게재시, 논문 요구량 대비 백분율(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로 인정한다. ※ 게재가 확정된 연구물은 공식적인 게재예정명서 제출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 단, 승진임용일 이전에 학술지에 게재된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의 경우 승진임용일 전에 게재예정명서를 제출하고, 승진임용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연구실적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승진임용일에 소급하여 승진이 취소됨. 단, 본 조항은 2020.9.1.자 승진임용자까지만 적용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부여하는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A&HCI Top 40% 1.3배, 기타 1배 - SSCI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기타 0.75배 - SCIE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기타 0.75배 - SCOPUS 0.6배 - SCI급 저널 Top%는 미국 Thomson社 Clarivate가 1년마다 발표하는 Impact Factor의 상위%로, 논문이 게재된 당해연도를 평가한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교원업적 평가 점수와 승진 심사점수는 상이할 수 있음) ※ 이공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이 BK21사업의 일환으로 지정한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필수연구업적으로 인정하되, SCOPUS에 색인된 경우에 한하여 SCIE Top 70% 수준으로 인정한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는 A&HCI, SSCI, SCIE, SCOPUS(Article, Article in Press, Review 형식의 Document Type만 인정)을 의미하며, SCOPUS 인정편수는 'Article'을 기준으로 하고 'Review'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한 다. Article 외 Document Type의 A&HCI와, Article, Review(Review Paper) 외 Document Type의 SSCI, SCIE의 인정 편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하며 해당 게재지의 Impact Factor와 무관하게 500점:120점 배점 비율을 따른다. ※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이란 '국제저명전문학술지', '국외일반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를 의미한다.	<별표 1> 승진 심사기준 특기사항 변경

현행	개정	비고																			
<별표 1-1> 승진 심사기준 □ 승진 심사기준 (사업 종료 후 - 연구비 수주액 충족 시) (2025.3.1. 개정) (논문 편수는 인정비용 기준) (신 설)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HK부교수 승진</th><th>HK교수 승진</th></tr> <tr> <td>승진 소요년수</td><td>6년</td><td>5년</td></tr> <tr> <td>연구비 수주액</td><td colspan="2">연평균 연구소 기반 공동 프로젝트 수주액 2천만원 이상</td></tr> <tr> <td>연구점수</td><td colspan="2">연 360점 × 직급별 재직기간</td></tr> <tr> <td rowspan="3">필수연구 업적</td><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5편 [다만,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A&HCI 1.8편 또는 SSCI 2.3편 또는 SCIE 11.7편 또는 SCOPUS 3.8편 포함]</td><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5편 [다만,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A&HCI 1.5편 또는 SSCI 2.0편 또는 SCIE 9.8편 또는 SCOPUS 3.3편 포함]</td></tr> <tr> <td>* 인문/사회/상경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에 대하여 다음 중 택1 필수 [선택1] 총 6건 이상 주저자 참여 [선택2] 논문 제출 편수의 1/2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td><td>* 인문/사회/상경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필수 * 이공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에 대하여 다음 중 택1 필수 [선택1] 총 6건 이상 주저자 참여 [선택2] 논문 제출 편수의 1/2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td></tr> <tr> <td></td><td></td></tr> </table> <별표 1-1> 승진 심사기준 □ 승진 심사기준 (사업 종료 후 - 연구비 수주액 미충족 시) (2025.3.1. 개정) (논문 편수는 인정비용 기준)	구분	HK부교수 승진	HK교수 승진	승진 소요년수	6년	5년	연구비 수주액	연평균 연구소 기반 공동 프로젝트 수주액 2천만원 이상		연구점수	연 360점 × 직급별 재직기간		필수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5편 [다만,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A&HCI 1.8편 또는 SSCI 2.3편 또는 SCIE 11.7편 또는 SCOPUS 3.8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5편 [다만,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A&HCI 1.5편 또는 SSCI 2.0편 또는 SCIE 9.8편 또는 SCOPUS 3.3편 포함]	* 인문/사회/상경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에 대하여 다음 중 택1 필수 [선택1] 총 6건 이상 주저자 참여 [선택2] 논문 제출 편수의 1/2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 인문/사회/상경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필수 * 이공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에 대하여 다음 중 택1 필수 [선택1] 총 6건 이상 주저자 참여 [선택2] 논문 제출 편수의 1/2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별표 1-1> 승진 심사기준 승진 심사기준 변경
구분	HK부교수 승진	HK교수 승진																			
승진 소요년수	6년	5년																			
연구비 수주액	연평균 연구소 기반 공동 프로젝트 수주액 2천만원 이상																				
연구점수	연 360점 × 직급별 재직기간																				
필수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5편 [다만,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A&HCI 1.8편 또는 SSCI 2.3편 또는 SCIE 11.7편 또는 SCOPUS 3.8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5편 [다만,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A&HCI 1.5편 또는 SSCI 2.0편 또는 SCIE 9.8편 또는 SCOPUS 3.3편 포함]																			
	* 인문/사회/상경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에 대하여 다음 중 택1 필수 [선택1] 총 6건 이상 주저자 참여 [선택2] 논문 제출 편수의 1/2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 인문/사회/상경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필수 * 이공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에 대하여 다음 중 택1 필수 [선택1] 총 6건 이상 주저자 참여 [선택2] 논문 제출 편수의 1/2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신 설)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HK부교수 승진</th><th>HK교수 승진</th></tr> <tr> <td>승진 소요년수</td><td>6년</td><td>5년</td></tr> <tr> <td>연구점수</td><td colspan="2">연 432점 × 직급별 재직기간</td></tr> <tr> <td rowspan="3">필수연구 업적</td><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8편 [다만,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A&HCI 2.2편 또는 SSCI 2.7편 또는 SCIE 14.0편 또는 SCOPUS 4.5편 포함]</td><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8편 [다만,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A&HCI 1.8편 또는 SSCI 2.4편 또는 SCIE 11.7편 또는 SCOPUS 4.0편 포함]</td></tr> <tr> <td>* 인문/사회/상경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에 대하여 다음 중 택1 필수 [선택1] 총 7건 이상 주저자 참여 [선택2] 논문 제출 편수의 1/2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td><td>* 인문/사회/상경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필수 * 이공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에 대하여 다음 중 택1 필수 [선택1] 총 7건 이상 주저자 참여 [선택2] 논문 제출 편수의 1/2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td></tr> <tr> <td></td><td></td></tr> </table> <별표 1-1> 승진 심사기준 □ 승진 심사기준 (사업 종료 후 - 연구비 수주액 미충족 시) (2025.3.1. 개정) (논문 편수는 인정비용 기준)	구분	HK부교수 승진	HK교수 승진	승진 소요년수	6년	5년	연구점수	연 432점 × 직급별 재직기간		필수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8편 [다만,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A&HCI 2.2편 또는 SSCI 2.7편 또는 SCIE 14.0편 또는 SCOPUS 4.5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8편 [다만,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A&HCI 1.8편 또는 SSCI 2.4편 또는 SCIE 11.7편 또는 SCOPUS 4.0편 포함]	* 인문/사회/상경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에 대하여 다음 중 택1 필수 [선택1] 총 7건 이상 주저자 참여 [선택2] 논문 제출 편수의 1/2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 인문/사회/상경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필수 * 이공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에 대하여 다음 중 택1 필수 [선택1] 총 7건 이상 주저자 참여 [선택2] 논문 제출 편수의 1/2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별표 1-1> 승진 심사기준 승진 심사기준 변경			
구분	HK부교수 승진	HK교수 승진																			
승진 소요년수	6년	5년																			
연구점수	연 432점 × 직급별 재직기간																				
필수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8편 [다만,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A&HCI 2.2편 또는 SSCI 2.7편 또는 SCIE 14.0편 또는 SCOPUS 4.5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8편 [다만, 해당 직급 재임기간 중 A&HCI 1.8편 또는 SSCI 2.4편 또는 SCIE 11.7편 또는 SCOPUS 4.0편 포함]																			
	* 인문/사회/상경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에 대하여 다음 중 택1 필수 [선택1] 총 7건 이상 주저자 참여 [선택2] 논문 제출 편수의 1/2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 인문/사회/상경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건 이상 주저자 참여 필수 * 이공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에 대하여 다음 중 택1 필수 [선택1] 총 7건 이상 주저자 참여 [선택2] 논문 제출 편수의 1/2 이상 주저자 참여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김정호 2022

간인(서명)

◎ 특기사항 (2025.3.1. 개정)

- ※ 필수연구업적 요건의 '주저자'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를 의미한다.
- ※ 공동연구는 인정비용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추가 가산한다. 다만, IF Top 10% 저널은 주저자인 경우 공저자수와 무관하게 최소 50% 참여율을 적용한다.
- ※ 국제저명전문학술지(SCOPUS 제외) 교차 게재시, 논문 요구량 대비 백분율(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로 인정한다.
- ※ 논문편수 산정에서 SSCI Top40% 1.2배, SCI(Top10% 1.5배, Top40% 1.1배) 카중치를 적용한다.
- ※ 논문편수 산정에서 부여하는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A&HCI Top 40% 1.3배, 기타 1배
 - SSCI Top10% 1.5배, Top40% 1.25배, Top70% 1배, 기타 0.75배
 - SCIE Top10% 1.5배, Top40% 1.25배, Top70% 1배, 기타 0.75배
 - SCOPUS 0.6배
 - SCI급 저널 Top%는 미국-Thomson社 Clarivate가 1년마다 발표하는 Impact Factor의 상위%로, 논문이 게재된 당해연도를 평가한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점수와 승진 심사점수는 상이할 수 있음)
- ※ 게재가 확정된 연구물은 공식적인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 다만, 승진임용일 이전에 학술지에 게재된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 '국제저명전문학술지'는 A&HCI, SSCI, SCIE, SCOPUS(Article, Article in Press, Review 형식의 Document Type만 인정)을 의미하며, SCOPUS 인정편수는 'Article'을 기준으로 하고 'Review'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한다. Article 외 Document Type의 A&HCI와, Article, Review(Review Paper) 외 Document Type의 SSCI, SCIE의 인정편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하며 해당 게재지의 Impact Factor와 무관하게 500점:120점 배정 비율을 따른다.
- ※ 이공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이 BK21사업의 일환으로 지정한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필수연구업적으로 인정하되, SCOPUS에 색인된 경우에 한하여 SCIE Top 70% 수준으로 인정한다.
- ※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이란 '국제저명전문학술지', '국외일반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를 의미한다.
- ※ '사업 종료'는 인문한국(HK)지원사업 및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의 종료를 의미하며, 후속사업(HK+ 2우형)을 수행하는 경우 그 후속사업의 종료를 의미한다. 사업 종료 시점은 사업 협약기간의 종료 시점으로 한다.
- ※ 연구비 수주액은 '연평균 연구소 기반 공동 프로젝트 수주액'을 해당 연구소 소속 HK교수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 ※ '승진 심사기준 (사업 종료 후)'은 '연구비 수주액 충족 시'를 우선 적용하되, 수주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족이 불가할 경우 '연구비 수주액 미충족 시'를 적용 가능하다.(다만, 연구비 수주 노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표 1-1>
승진 심사기준
특기사항 변경

(신 설)



현행	개정	비고									
	□ 재임용 심사기준 (2018. 9. 1. 이후) (2025.3.1. 개정) (논문 편수는 인정비를 기준) <table><tr><th>구분</th><th>재임용</th></tr><tr><td>연구 점수</td><td>연 360점 × 계약기간</td></tr><tr><td rowspan="3">필수 연구 업적</td><td>SCI급 논문 총족시 1.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56점 2. 계약기간 중 A&HCI 0.8편 또는 SSCI 1.0편 또는 SCIE 3.1편 또는 SCOPUS 1.7편 ※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충족하여야 함.</td></tr><tr><td>SCI급 논문 미충족시 1.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6편 2. 계약기간 중 국내 학술저서 이상 1.0편 및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7편 ※ 제1호와 제2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td></tr><tr><td colspan="2">※ 신규임용 이후 최초 재임용을 위한 '필수연구업적'은 'SCI급 논문 총족시' 기준만 인정하며, '필수연구업적'의 'SCI급 논문 미충족시' 기준은 적용 불가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td></tr></table>	구분	재임용	연구 점수	연 360점 × 계약기간	필수 연구 업적	SCI급 논문 총족시 1.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56점 2. 계약기간 중 A&HCI 0.8편 또는 SSCI 1.0편 또는 SCIE 3.1편 또는 SCOPUS 1.7편 ※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충족하여야 함.	SCI급 논문 미충족시 1.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6편 2. 계약기간 중 국내 학술저서 이상 1.0편 및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7편 ※ 제1호와 제2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신규임용 이후 최초 재임용을 위한 '필수연구업적'은 'SCI급 논문 총족시' 기준만 인정하며, '필수연구업적'의 'SCI급 논문 미충족시' 기준은 적용 불가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별표 2> 재임용 심사기준 변경
구분	재임용										
연구 점수	연 360점 × 계약기간										
필수 연구 업적	SCI급 논문 총족시 1.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56점 2. 계약기간 중 A&HCI 0.8편 또는 SSCI 1.0편 또는 SCIE 3.1편 또는 SCOPUS 1.7편 ※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충족하여야 함.										
	SCI급 논문 미충족시 1.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6편 2. 계약기간 중 국내 학술저서 이상 1.0편 및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7편 ※ 제1호와 제2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신규임용 이후 최초 재임용을 위한 '필수연구업적'은 'SCI급 논문 총족시' 기준만 인정하며, '필수연구업적'의 'SCI급 논문 미충족시' 기준은 적용 불가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간인(서명)



현행	개정	비고
	◎ 특기사항 (2025.3.1. 개정) ※ 공동연구는 인정비율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추가 가산한다. 다만, IF Top 10% 저널은 주저자인 경우 공저자수와 무관하게 최소 50% 참여율을 적용한다. ※ 게재가 확정된 연구물은 공식적인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 단, 재임용일 이전에 학술지에 게재된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의 경우 재임용일 전에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재임용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연구실적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재임용일에 소급하여 재임용이 취소된다. 다만, 본 조항 개정 시행 전 재직중인 교원의 경우 2025년 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재임용 심사 1회에 한하여 본 조항을 적용하고, 이후 재임용 심사에서는 계약만료일까지 최종연구물을 제출해야 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부여하는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A&HCI Top 40% 1.3배, 기타 1배 - SSCI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기타 0.75배 - SCIE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기타 0.75배 - SCOPUS 0.6배 - SCI급 저널 Top%는 미국-Thomson社 Clarivate가 1년마다 발표하는 Impact Factor의 상위%로, 논문이 게재된 당해연도를 평가한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교원업적 평가 점수와 재임용 심사점수는 상이할 수 있음) ※ 이공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이 BK21사업의 일환으로 지정한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필수연구업적으로 인정하되, SCOPUS에 색인된 경우에 한하여 SCIE Top 70% 수준으로 인정한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는 A&HCI, SSCI, SCIE, SCOPUS(Article, Article in Press, Review 형식의 Document Type만 인정)을 의미하며, SCOPUS 인정편수는 'Article'을 기준으로 하고 'Review'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한다. Article 외 Document Type의 A&HCI와, Article, Review(Review Paper) 외 Document Type의 SSCI, SCIE의 인정 편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하며 해당 게재지의 Impact Factor와 무관하게 500점:120점 배점 비율을 따른다. ※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이란 '국제저명전문학술지', '국외일반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를 의미한다. ※ '국내 학술저서 이상'이란 '국제 학술저서(전문)', '국제 학술저서(일반)', '국내학술저서'를 의미한다.	<별표 2> 재임용 심사기준 특기사항 변경

현행	개정	비고																		
(신설)	<별표 2-1> 재임용 심사기준 ☐ 재임용 심사기준 (사업 종료 후 - 연구비 수주액 충족 시) (2025.3.1. 개정) (논문 편수는 인정비를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조교수 재임용</th> <th>부교수 재임용</th> </tr> </thead> <tbody> <tr> <td>연구비 수주액</td> <td>연평균 연구소 기반 공동 프로젝트 수주액 2천만원 이상</td> <td></td> </tr> <tr> <td>연구점수</td> <td>연 360 × 계약기간</td> <td></td> </tr> <tr> <td>필수 연구 업적</td> <td>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80점 [다만, 해당직급 재임기간 계약기간중 A&HCI 0.9편 또는 SSCI 1.2편 또는 SCIE 4.7편 또는 SCOPUS 2.0편 포함] </td> <td>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80점 [다만, 해당직급 재임기간 계약기간중 A&HCI 1.2편 또는 SSCI 1.5편 또는 SCIE 4.7편 또는 SCOPUS 2.5편 포함] </td> </tr> <tr> <td></td> <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360점</td> <td></td> </tr> <tr> <td></td> <td> * 신규임용 이후 최초 재임용을 위한 '필수연구업적'은 'SCI급 논문 충족시' 기준만 인정 하며, '필수연구업적'의 'SCI급 논문 미충족시' 기준은 적용 불가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조교수 재임용	부교수 재임용	연구비 수주액	연평균 연구소 기반 공동 프로젝트 수주액 2천만원 이상		연구점수	연 360 × 계약기간		필수 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80점 [다만, 해당직급 재임기간 계약기간중 A&HCI 0.9편 또는 SSCI 1.2편 또는 SCIE 4.7편 또는 SCOPUS 2.0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80점 [다만, 해당직급 재임기간 계약기간중 A&HCI 1.2편 또는 SSCI 1.5편 또는 SCIE 4.7편 또는 SCOPUS 2.5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360점			* 신규임용 이후 최초 재임용을 위한 '필수연구업적'은 'SCI급 논문 충족시' 기준만 인정 하며, '필수연구업적'의 'SCI급 논문 미충족시' 기준은 적용 불가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별표 2-1> 재임용 심사기준 변경
구분	조교수 재임용	부교수 재임용																		
연구비 수주액	연평균 연구소 기반 공동 프로젝트 수주액 2천만원 이상																			
연구점수	연 360 × 계약기간																			
필수 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80점 [다만, 해당직급 재임기간 계약기간중 A&HCI 0.9편 또는 SSCI 1.2편 또는 SCIE 4.7편 또는 SCOPUS 2.0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80점 [다만, 해당직급 재임기간 계약기간중 A&HCI 1.2편 또는 SSCI 1.5편 또는 SCIE 4.7편 또는 SCOPUS 2.5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360점																			
	* 신규임용 이후 최초 재임용을 위한 '필수연구업적'은 'SCI급 논문 충족시' 기준만 인정 하며, '필수연구업적'의 'SCI급 논문 미충족시' 기준은 적용 불가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신설)	<별표 2-1> 재임용 심사기준 ☐ 재임용 심사기준 (사업 종료 후 - 연구비 수주액 미충족 시) (2025.3.1. 개정) (논문 편수는 인정비를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조교수 재임용</th> <th>부교수 재임용</th> </tr> </thead> <tbody> <tr> <td>연구점수</td> <td>연 432 × 계약기간</td> <td></td> </tr> <tr> <td>필수 연구 업적</td> <td>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16점 [다만, 해당직급 재임기간 계약기간중 A&HCI 1.1편 또는 SSCI 1.5편 또는 SCIE 5.6편 또는 SCOPUS 2.5편 포함] </td> <td>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16점 [다만, 해당직급 재임기간 계약기간중 A&HCI 1.5편 또는 SSCI 1.8편 또는 SCIE 5.6편 또는 SCOPUS 3.0편 포함] </td> </tr> <tr> <td></td> <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432점</td> <td></td> </tr> <tr> <td></td> <td> * 신규임용 이후 최초 재임용을 위한 '필수연구업적'은 'SCI급 논문 충족시' 기준만 인정 하며, '필수연구업적'의 'SCI급 논문 미충족시' 기준은 적용 불가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조교수 재임용	부교수 재임용	연구점수	연 432 × 계약기간		필수 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16점 [다만, 해당직급 재임기간 계약기간중 A&HCI 1.1편 또는 SSCI 1.5편 또는 SCIE 5.6편 또는 SCOPUS 2.5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16점 [다만, 해당직급 재임기간 계약기간중 A&HCI 1.5편 또는 SSCI 1.8편 또는 SCIE 5.6편 또는 SCOPUS 3.0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432점			* 신규임용 이후 최초 재임용을 위한 '필수연구업적'은 'SCI급 논문 충족시' 기준만 인정 하며, '필수연구업적'의 'SCI급 논문 미충족시' 기준은 적용 불가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별표 2-1> 재임용 심사기준 변경			
구분	조교수 재임용	부교수 재임용																		
연구점수	연 432 × 계약기간																			
필수 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16점 [다만, 해당직급 재임기간 계약기간중 A&HCI 1.1편 또는 SSCI 1.5편 또는 SCIE 5.6편 또는 SCOPUS 2.5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16점 [다만, 해당직급 재임기간 계약기간중 A&HCI 1.5편 또는 SSCI 1.8편 또는 SCIE 5.6편 또는 SCOPUS 3.0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432점																			
	* 신규임용 이후 최초 재임용을 위한 '필수연구업적'은 'SCI급 논문 충족시' 기준만 인정 하며, '필수연구업적'의 'SCI급 논문 미충족시' 기준은 적용 불가 * 이공계 교원은 SCOPUS 불인정																			

간인(서명)

김정환



현행	개정	비고
◎ 특기사항 (2025.3.1. 개정) ※ 공동연구는 인정비용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추가 가산한다. 다만, IF Top 10% 저널은 주저자인 경우 공저자수와 무관하게 최소 50% 참여율을 적용한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 교차 게재시, 논문 요구량 대비 백분율(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로 인정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SSCI Top40% 1.2배, SCI(Top10% 1.5배, Top40% 1.1배) 가중치를 적용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부여하는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A&HCI Top 40% 1.3배, 기타 1배 - SSCI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기타 0.75배 - SCIE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기타 0.75배 - SCOPUS 0.6배 - SCI급 저널 Top%는 미국 Thomson社 Clarivate가 1년마다 발표하는 Impact Factor의 상위%로, 논문이 게재된 당해연도를 평가한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동일 논문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점수와 재임용 심사점수는 상이할 수 있음) ※ 게재가 확정된 연구물은 공식적인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 다만, 재임용일 이전에 학술지에 게재된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의 경우 재임용일 전에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재임용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연구실적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재임용일에 소급하여 재임용이 취소된다. 다만, 본 조항 개정 시행 전 재직중인 교원의 경우 2025년 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재임용 심사 1회에 한하여 본 조항을 적용하고, 이후 재임용 심사에서는 계약만료일까지 최종연구물을 제출해야 한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는 A&HCI, SSCI, SCIE, SCOPUS(Article, Article in Press, Review 형식의 Document Type만 인정)을 의미하며, SCOPUS 인정편수는 'Article'을 기준으로 하고 'Review'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한다. Article 외 Document Type의 A&HCI와, Article, Review(Review Paper) 외 Document Type의 SSCI, SCIE의 인정 편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하며 해당 게재지의 Impact Factor와 무관하게 500점:120점 배점 비율을 따른다. ※ 이공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이 BK21사업의 일환으로 지정한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필수연구업적으로 인정하되, SCOPUS에 색인된 경우에 한하여 SCIE Top 70% 수준으로 인정한다. ※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이란 '국제저명전문학술지', '국외일반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를 의미한다. ※ '사업 종료'는 인문한국(HK)지원사업 및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의 종료를 의미하며, 후속사업(HK+ 2유형)을 수행하는 경우 그 후속사업의 종료를 의미한다. 사업 종료 시점은 사업 협약기간의 종료 시점으로 한다. ※ 연구비 수주액은 '연평균 연구소 기반 공동 프로젝트 수주액'을 해당 연구소 소속 HK교수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 '재임용 심사기준 (사업 종료 후)'은 '연구비 수주액 총족 시'를 우선 적용하되, 수주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족이 불가할 경우 '연구비 수주액 미충족 시'를 적용 가능하다.(다만, 연구비 수주 노력에 대한 증빙지료를 제출해야 함.)	<별표 2-1> 재임용 심사기준 특기사항 변경	

간인(서명)	7월 28일	2022. 07. 28	
--------	--------	--------------	---

현행	개정	비고								
현행 (신설)	<별표 4> 승급 심사기준 □ 승급 심사기준 (2018. 9. 1. 이후) (2025.3.1. 개정) (논문 편수는 인정비용 기준) <table><thead><tr><th>승급 호봉</th><th>승급 기준</th></tr></thead><tbody><tr><td>HK교수 10호급</td><td>연구점수 240점 [단, 해당 호급 재임기간 중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7편 포함]</td></tr><tr><td>HK교수 9호급부터 HK교수 6호급까지</td><td>연구점수 480점 [단, 해당 호급 재임기간 중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0편 및 국제저명전문학술지 0.7편 포함]</td></tr><tr><td>HK교수 5호급부터 HK교수 1호급까지</td><td>연구점수 400점 [단, 해당 호급 재임기간 중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0편 포함]</td></tr></tbody></table> <특기사항> ※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이란 '국제저명전문학술지', '국외일반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를 의미한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는 A&HCI, SSCI, SCIE, SCOPUS(Article, Article in Press, Review 형식의 Document Type만 인정)을 의미하며, SCOPUS 인정편수는 'Article'을 기준으로 하고 'Review'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한 다. Article 외 Document Type의 A&HCI와, Article, Review(Review Paper) 외 Document Type의 SSCI, SCIE의 인정 편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하며 해당 게재지의 Impact Factor와 무관하게 500점:120점 배점 비율을 따른다. ※ 만 62세가 되는 시점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승급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면제한다.	승급 호봉	승급 기준	HK교수 10호급	연구점수 240점 [단, 해당 호급 재임기간 중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7편 포함]	HK교수 9호급부터 HK교수 6호급까지	연구점수 480점 [단, 해당 호급 재임기간 중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0편 및 국제저명전문학술지 0.7편 포함]	HK교수 5호급부터 HK교수 1호급까지	연구점수 400점 [단, 해당 호급 재임기간 중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0편 포함]	<별표 4> 승급 심사기준 변경
	승급 호봉	승급 기준								
	HK교수 10호급	연구점수 240점 [단, 해당 호급 재임기간 중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7편 포함]								
	HK교수 9호급부터 HK교수 6호급까지	연구점수 480점 [단, 해당 호급 재임기간 중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0편 및 국제저명전문학술지 0.7편 포함]								
	HK교수 5호급부터 HK교수 1호급까지	연구점수 400점 [단, 해당 호급 재임기간 중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0편 포함]								

(신 설)

간인(서명)	김동철	2025. 7. 2	
--------	-----	------------	---

현행	개정	비고																		
	<별표 4-1> 승급 심사기준 ☐ 승급 심사기준 (사업 종료 후) (2025.3.1. 개정) (논문 편수는 인정받을 기준) <table><thead><tr><th>승급 호봉</th><th colspan="2">승급 기준</th></tr></thead><tbody><tr><td rowspan="2">HK교수 10호급</td><td>연구비 수주액 충족시</td><td>1. 연평균 연구소 기반 공동 프로젝트 수주액 2천만원 이상 2.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27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 ※ 1호와 2호를 각각 충족해야 함</td></tr><tr><td>연구비 수주액 미충족시</td><td>[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36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td></tr><tr><td rowspan="2">HK교수 9호급부터 HK교수 6호급까지</td><td>연구비 수주액 충족시</td><td>1. 연평균 연구소 기반 공동 프로젝트 수주액 2천만원 이상 2.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54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 ※ 1호와 2호를 각각 충족해야 함</td></tr><tr><td>연구비 수주액 미충족시</td><td>단, 9호급 또는 8호급 승급 중 1회에 대해서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함 (이공계 교원은 9~6호급 매호급 승급 시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필수)</td></tr><tr><td rowspan="2">HK교수 5호급부터 HK교수 1호급까지</td><td>연구비 수주액 충족시</td><td>[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72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td></tr><tr><td>연구비 수주액 미충족시</td><td>단, 9호급 또는 8호급 승급 중 1회에 대해서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함 (이공계 교원은 9~6호급 매호급 승급 시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필수)</td></tr></tbody></table>	승급 호봉	승급 기준		HK교수 10호급	연구비 수주액 충족시	1. 연평균 연구소 기반 공동 프로젝트 수주액 2천만원 이상 2.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27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 ※ 1호와 2호를 각각 충족해야 함	연구비 수주액 미충족시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36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	HK교수 9호급부터 HK교수 6호급까지	연구비 수주액 충족시	1. 연평균 연구소 기반 공동 프로젝트 수주액 2천만원 이상 2.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54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 ※ 1호와 2호를 각각 충족해야 함	연구비 수주액 미충족시	단, 9호급 또는 8호급 승급 중 1회에 대해서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함 (이공계 교원은 9~6호급 매호급 승급 시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필수)	HK교수 5호급부터 HK교수 1호급까지	연구비 수주액 충족시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72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	연구비 수주액 미충족시	단, 9호급 또는 8호급 승급 중 1회에 대해서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함 (이공계 교원은 9~6호급 매호급 승급 시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필수)	<별표 4> 승급 심사기준 변경
승급 호봉	승급 기준																			
HK교수 10호급	연구비 수주액 충족시	1. 연평균 연구소 기반 공동 프로젝트 수주액 2천만원 이상 2.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27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 ※ 1호와 2호를 각각 충족해야 함																		
	연구비 수주액 미충족시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36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																		
HK교수 9호급부터 HK교수 6호급까지	연구비 수주액 충족시	1. 연평균 연구소 기반 공동 프로젝트 수주액 2천만원 이상 2.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54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 ※ 1호와 2호를 각각 충족해야 함																		
	연구비 수주액 미충족시	단, 9호급 또는 8호급 승급 중 1회에 대해서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함 (이공계 교원은 9~6호급 매호급 승급 시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필수)																		
HK교수 5호급부터 HK교수 1호급까지	연구비 수주액 충족시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또는 산학협력 실적] 720점 또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																		
	연구비 수주액 미충족시	단, 9호급 또는 8호급 승급 중 1회에 대해서는 국제저명전문학술지 2편(편수기준)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함 (이공계 교원은 9~6호급 매호급 승급 시 국제저명전문학술지 1편(편수기준) 필수)																		

(신 설)

간인(서명)	7/2 7/2 7/2	인
--------	-------------	---

현행	개정	비고
(신설)	<특기사항> (2025.3.1. 개정) ※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이란 국제저명전문화술지, 국외일반전문화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와 국제학술저서(전문·일반), 국내학술저서, 사전, 전문분야 번역서를 의미한다. ※ 산학협력 실적은 국제/국내 특허·SW 등록, 연구비 수혜액(산업체 연구비 수혜만·안정 지원기관 무관, R&D 과제에 한함), 기술이전 실적을 의미한다. ※ '국제저명전문화술지'는 A&HCI, SSCI, SCIE, SCOPUS(Article, Article in Press, Review 형식의 Document Type만 인정)을 의미하며, SCOPUS 인정편수는 'Article'을 기준으로 하고 'Review'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한다. Article 외 Document Type의 A&HCI와, Article, Review(Review Paper) 외 Document Type의 SSCI, SCIE의 인정 편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하며 해당 게재지의 Impact Factor와 무관하게 500점:120점 배점 비율을 따른다. ※ 1호와 2호를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 종료'는 인문한국(HK)지원사업 및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의 종료를 의미하며, 후속사업(HK+ 2유형)을 수행하는 경우 그 후속사업의 종료를 의미한다. 사업 종료 시점은 사업 협약기간의 종료 시점으로 한다. ※ '승급 심사기준 (사업 종료 후)'은 '연구비 수주액 충족 시'를 우선 적용하되, 수주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족이 불가할 경우 '연구비 수주액 미충족 시'를 적용 가능하다.(다만, 연구비 수주 노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만 62세가 되는 시점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승급에 필요한 연구 실적을 면제한다.	<별표 4> 승급 심사기준 특기사항 변경

간인(서명)	76 7036	2022	
--------	---------	------	---

(붙임)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7조 (심사기준) 승진 및 재임용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별표 2>, <별표 2-1>과 같다.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 제3조 연구업적 인정 점수표를 준용하며 심사기준은 최초 임용 시 본인의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임교수 승진 및 재임용 심사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심사기준) 승진 및 재임용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별표 2>, <별표 2-1>과 같다.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 제3조 연구업적 인정 점수표를 준용하며 심사기준은 최초 임용 시 본인의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임교수 승진 및 재임용 심사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2 수정
(신 설)	<u>부 칙(2025.2.13)</u>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적용) 이 규정 개정 시행 전 재직 중인 연구중심 교수의 2025.2.28. 이후 처음 도래하는 재임용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재임용부터 <별표2>의 2025.3.1. 이후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신설

간인(서명)

김정철

이재은



현행	개정	비고																									
	<별표 2> 재임용 심사기준 ③ 연구중심교수 (2025.3.1. 이후) <table><tr><th colspan="5">연구중심교수 재임용 심사기준</th></tr><tr><th>구분</th><th>인문계</th><th>사회·상경계</th><th>법학계</th><th>이공계</th></tr><tr><td>재임용 소요기간</td><td colspan="4">2년</td></tr><tr><td>연구점수</td><td colspan="4">2년간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480점</td></tr><tr><td>필수연구 업적</td><td>A&HCI 0.5편 또는 SCOPUS 0.8편</td><td colspan="2">SSCI 0.7편 또는 SCOPUS 1.2편</td><td>SCOPUS 0.8편 SCIE 3.1편</td></tr></table>	연구중심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구분	인문계	사회·상경계	법학계	이공계	재임용 소요기간	2년				연구점수	2년간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480점				필수연구 업적	A&HCI 0.5편 또는 SCOPUS 0.8편	SSCI 0.7편 또는 SCOPUS 1.2편		SCOPUS 0.8편 SCIE 3.1편	<별표 2> 연구중심교수 재임용 심사기준(2025.3. 1. 이후) 신설
연구중심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구분	인문계	사회·상경계	법학계	이공계																							
재임용 소요기간	2년																										
연구점수	2년간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480점																										
필수연구 업적	A&HCI 0.5편 또는 SCOPUS 0.8편	SSCI 0.7편 또는 SCOPUS 1.2편		SCOPUS 0.8편 SCIE 3.1편																							
(신설)																											
	⑤ 학생지도중심교수 <table><tr><th colspan="4">세부기준</th></tr><tr><th>구분</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th></tr><tr><td rowspan="2">연구 점수</td><td>논문</td><td>Pass / Fail</td><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 120점</td></tr><tr><td>강의평가</td><td>30 26 22</td><td>4.9 이상 30점 4.6 이상 26점 4.6 미만 22점 * 전체 개설 수업 평점 평균 기준 * 재임용 심사기간 학기 평균(재임용 심사 진행 학기는 제외)</td></tr><tr><td rowspan="2">학생 교육</td><td>학생지도 및 상담 건수</td><td>최대 40점</td><td>(건수 / 300) × 40점 재임용 심사기간 학기 평균(재임용 심사 진행 학기는 제외)</td></tr><tr><td>학생지도 전반에 대한 열의와 자세</td><td>30 26 22</td><td>우수 30점 보통 26점 미흡 22점</td></tr></table>	세부기준				구분	평가요소	배점		연구 점수	논문	Pass / Fail	연평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강의평가	30 26 22	4.9 이상 30점 4.6 이상 26점 4.6 미만 22점 * 전체 개설 수업 평점 평균 기준 * 재임용 심사기간 학기 평균(재임용 심사 진행 학기는 제외)	학생 교육	학생지도 및 상담 건수	최대 40점	(건수 / 300) × 40점 재임용 심사기간 학기 평균(재임용 심사 진행 학기는 제외)	학생지도 전반에 대한 열의와 자세	30 26 22	우수 30점 보통 26점 미흡 22점	<별표 2> 학생지도중심교 수 재임용 심사기준 신설			
세부기준																											
구분	평가요소	배점																									
연구 점수	논문	Pass / Fail	연평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강의평가	30 26 22	4.9 이상 30점 4.6 이상 26점 4.6 미만 22점 * 전체 개설 수업 평점 평균 기준 * 재임용 심사기간 학기 평균(재임용 심사 진행 학기는 제외)																								
학생 교육	학생지도 및 상담 건수	최대 40점	(건수 / 300) × 40점 재임용 심사기간 학기 평균(재임용 심사 진행 학기는 제외)																								
	학생지도 전반에 대한 열의와 자세	30 26 22	우수 30점 보통 26점 미흡 22점																								
(신설)																											

간인(서명) 김동진 김지은



현행	개정	비고
	○특기사항 (2025.3.1. 이후) * 공동연구는 인정비용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추가 가산한다. * 다만, IF Top 10% 저널은 주저자인 경우 공저자수와 무관하게 최소 50%(자연과학대학 실험학과(전자물리학과, 환경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소속 교원의 경우에는 70%) 참여율을 적용한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SCOPUS 제외) 교차 게재시, 계열별 국제저명전문학술지 논문 요구량 대비 백분율(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로 인정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수학·통계학과(수학교육전공 포함) SCIE 실적은 1.5배(150%)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가중치는 JCR 카테고리상 해당 키워드(분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산업경영공학과 SCIE 실적은 1.3배(130%)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가중치는 JCR 카테고리상 해당 키워드(분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부여하는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SSCI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기타 0.75배 - SCIE Top 10% 1.5배, Top 40% 1.25배, Top 70% 1배, 기타 0.75배 - SCOPUS 0.6배 - SCI급 저널 Top%는 미국 Thomson Clarivate가 1년마다 발표하는 Impact Factor의 상위%로, 논문이 게재된 당해연도를 평가한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점수와 재임용 심사점수는 상이할 수 있음) * 국제저명전문학술지는 A&HCI, SSCI, SCIE, SCOPUS(Article, Article-in-Press, Review 형식의 Document Type만 인정)를 의미하며, SCOPUS 인정 편수는 Article을 기준으로 하고 Article-in Press, Review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한다. Article 외 Document Type의 A&HCI와, Article, Review(Review Paper) 외 Document Type의 SSCI, SCIE의 인정 편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하며 해당 게재지의 Impact Factor와 무관하게 500점:120점 배점 비율을 따른다. * 이공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이 BK21사업의 일환으로 지정한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필수연구업적으로 인정하되, SCOPUS에 색인된 경우에 한하여 SCIE Top 70% 수준으로 인정한다. *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이란 국제저명전문학술지, 국외일반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를 의미한다. * 게재가 확정된 연구물은 공식적인 게재예정명세서 제출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 다만, 재임용일 이전에 학술지에 게재된 최종 연구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국제저명학술지의 경우는 재임용일 전에 게재예정명서를 제출하고, 재임용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연구실적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재임용일에 소급하여 재임용이 취소된다. 다만, 본 조항 개정 시행 전 재직중인 교원의 경우 2025년 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재임용 심사 1회에 한하여 본 조항을 적용하고, 이후 재임용 심사에서는 계약만료일까지 최종연구물을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재임용 심사기준 (2025.3.1. 이후) 특기사항 신설

(신설)

(붙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 6 조 (임용) ① ~ ③ (생략) ④ 교원의 승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⑤ (생략) (신설) ⑥ ~ ⑦ (생략)	제 6 조 (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원의 승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⑤ (현행과 같음) ⑥ <u>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2년 이상 재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5>를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u> ⑦ ~ ⑧ (현행과 같음)	조항 이동 및 별표 수정, 신설 항번호 순연
제 9 조 (신규채용의 재임) 신규채용된 교수는 1년 이내에(단, 임용기간을 3년으로 한 경우는 3년 이내)에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재임발령을 받아야 한다. 동 기간내에 갱신계약을 하지 못하여 재임발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임된다.	제 9 조 (신규채용의 재임) 신규채용된 교수는 <u>임용 기간 종료 이전에</u>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재임발령을 받아야 한다. 동 기간내에 갱신계약을 하지 못하여 재임발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임된다.	자구 수정
제10조의 2 (재임용 절차) ① 교원의 재임용은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학과(부)장은 <u>아래 제2항의 재임용</u> 심사기준에 따른 연구실적 및 학과(부) 발전기여도 평정결과 및 그 평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단, 학과장 본인이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 대상인 경우, 의견서 작성은 아래의 순서에 의해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 중 1인이 작성하고, 학과장 본인은 의견서의 학과 교수 서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소속 학과 내국인 교수 ㉡ 부학장 ㉢ 대학(원)장 ㉣ <u>해당 캠퍼스 교양대학장</u> 2. (생략) ② <u>외국인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3>과 같다.</u> (신설)	제10조의 2 (<u>재임용 및 승진 절차</u>) ① 교원의 <u>재임용 및 승진</u> 은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학과(부)장은 <u>제6조의 재임용 및 승진</u> 심사기준에 따른 연구실적과 <u>학생지도와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과(부) 발전기여도 등</u> 평정결과 및 그 평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단, 학과장 본인이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 대상인 경우, 의견서 작성은 아래의 순서에 의해 각 <u>목에</u> 해당하는 교원 중 1인이 작성하고, 학과장 본인은 의견서의 학과 교수 서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소속 학과 내국인 교수 ㉡ 부학장 ㉢ 대학(원)장 ㉣ (<u>삭제</u>) 2. (현행과 같음) ② (<u>삭제</u>) ③ <u>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u>	자구 수정 교양대학 삭제 조항 이동(6조) 항 신설

간인(서명)	김정철	학 재 령	
--------	-----	-------	---

현행	개정	비고																																																																																						
	부 칙(2025.2.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적용) 이 규정 개정 시행 전 재직 중인 교원의 2025.2.28. 이후 처음 도래하는 재임용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다만 <별표3> 외국인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의 '연구실적 4.'에 대해서는 교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025.3.1. 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후 재임용부터 <별표 3> 외국인교원평가표의 2025.3.1. 이후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외국인교원 승진 심사기준 <table><tr><th>구 분</th><th>부교수 승진</th><th>교수 승진</th></tr><tr><td>승진 소요 년수</td><td>6 년</td><td>5 년</td></tr><tr><td>연구 점수</td><td colspan="2">연 240점 × 직급별 재직 기간</td></tr><tr><td>특기 사항</td><td colspan="2">(생략)</td></tr></table>	구 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승진 소요 년수	6 년	5 년	연구 점수	연 240점 × 직급별 재직 기간		특기 사항	(생략)		<별표 1> 외국인교원 승진 심사기준 □ 연구실적 <table><tr><th>구 분</th><th>부교수 승진</th><th>교수 승진</th></tr><tr><td>승진 소요 년수</td><td>6 년</td><td>5 년</td></tr><tr><td>연구 점수</td><td colspan="2">연 240점 × 직급별 재직 기간</td></tr><tr><td>특기 사항</td><td colspan="2">(현행과 같음)</td></tr></table> □ 외국인교원평가표 1. 학과(부) 교수회의에서 다음의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교원을 평정심사한다. <table><tr><th colspan="5">평가항목 및 평가요소</th><th>비고</th></tr><tr><td rowspan="4">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td><td>강의평가 결과</td><td colspan="3">/30점</td><td rowspan="4">배점 및 평가기준은 <별표3> 재임용 심사기준과 동일</td></tr><tr><td>후보강 이행</td><td colspan="3">/10점</td></tr><tr><td>폐강 강의수</td><td colspan="3">/10점</td></tr><tr><td>강의제반 직무 수행력</td><td colspan="3">/10점</td></tr><tr><td rowspan="3">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td><td>강의평가 개선도</td><td colspan="3">가·감점 -5 ~ +5점</td><td rowspan="3"></td></tr><tr><td>교육자로서의 역량</td><td colspan="3">/15점</td></tr><tr><td>복무태도</td><td colspan="3">/15점</td></tr><tr><td rowspan="2">학과발전 기여도</td><td>수업충실도</td><td colspan="3">/10점</td><td rowspan="2"></td></tr><tr><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불량</td></tr><tr><td colspan="2"></td><td>20</td><td>15</td><td>10</td><td>5</td><td>0</td></tr><tr><td colspan="2">합계 및 총평 (총점 120점 이상 취득시 승진 추천)</td><td colspan="3">/ 120점</td><td></td></tr></table> ※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최근의 학사 기록을 활용함 2. 평정 결과 총점이 90점 이상이어야 승진 대상이 된다.	구 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승진 소요 년수	6 년	5 년	연구 점수	연 240점 × 직급별 재직 기간		특기 사항	(현행과 같음)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비고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강의평가 결과	/30점			배점 및 평가기준은 <별표3> 재임용 심사기준과 동일	후보강 이행	/10점			폐강 강의수	/10점			강의제반 직무 수행력	/10점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강의평가 개선도	가·감점 -5 ~ +5점				교육자로서의 역량	/15점			복무태도	/15점			학과발전 기여도	수업충실도	/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5	10	5	0	합계 및 총평 (총점 120점 이상 취득시 승진 추천)		/ 120점				평가표 신설
구 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승진 소요 년수	6 년	5 년																																																																																						
연구 점수	연 240점 × 직급별 재직 기간																																																																																							
특기 사항	(생략)																																																																																							
구 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승진 소요 년수	6 년	5 년																																																																																						
연구 점수	연 240점 × 직급별 재직 기간																																																																																							
특기 사항	(현행과 같음)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비고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강의평가 결과	/30점			배점 및 평가기준은 <별표3> 재임용 심사기준과 동일																																																																																			
	후보강 이행	/10점																																																																																						
	폐강 강의수	/10점																																																																																						
	강의제반 직무 수행력	/10점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강의평가 개선도	가·감점 -5 ~ +5점																																																																																						
	교육자로서의 역량	/15점																																																																																						
	복무태도	/15점																																																																																						
학과발전 기여도	수업충실도	/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5	10	5	0																																																																																		
합계 및 총평 (총점 120점 이상 취득시 승진 추천)		/ 120점																																																																																						

간인(서명)

김동철

이재근



현행	개정	비고																		
<별표 3> 외국인교원 재임용 심사 기준 □ 연구실적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연구점수</th><th>비고</th></tr> <tr> <td>전공강의 외국인교원</td><td>연간 120점 이상</td><td></td></tr> <tr> <td>회화강의 외국인교원</td><td>연간 100점 이상</td><td></td></tr> </table> 1~3. (생략) ※ (생략)	구분	연구점수	비고	전공강의 외국인교원	연간 120점 이상		회화강의 외국인교원	연간 100점 이상		<별표 3> 외국인교원 재임용 심사 기준 □ 연구실적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연구점수</th><th>비고</th></tr> <tr> <td>전공강의 외국인교원</td><td>연간 120점 이상</td><td></td></tr> <tr> <td>회화강의 외국인교원</td><td>연간 100점 이상</td><td></td></tr> </table> 1~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4. 교원이 재임용을 위한 연구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용을 종료한다. 단, 연구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과 교수 과반의 동의를 거쳐 학과장이 재임용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하나를 전제로 1년동안 재임용 할 수 있다. ㉞ 외국인교원평가표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기존 임용기간 동안 미충족한 연구점수 및 1년간 재임용을 위한 연구점수를 1년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㉟ 외국인교원평가표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1년 동안 이전 임용계약 상 기본시수의 150%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학과 사정 등으로 기본시수의 150% 수행 불가시 미수행 시수만큼 급여 공제함)	구분	연구점수	비고	전공강의 외국인교원	연간 120점 이상		회화강의 외국인교원	연간 100점 이상		연구실적 미충족 시 재임용 유예 조건 추가
구분	연구점수	비고																		
전공강의 외국인교원	연간 120점 이상																			
회화강의 외국인교원	연간 100점 이상																			
구분	연구점수	비고																		
전공강의 외국인교원	연간 120점 이상																			
회화강의 외국인교원	연간 100점 이상																			

간인(서명)	김정철	박재호	
--------	-----	-----	---

현행	개정	비고																																																																																
(신설) 학생교육 에 관한 사항 (배점 60점) (가·감점 5점)	□ 외국인교원평가표(2025.3.1. 이후) 1. 학과(부)교수회의에서 다음의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외국 인교원을 평정심사한다. <table><tr><th>평가항목</th><th colspan="3">평가요소</th></tr><tr><td rowspan="3">원어강의 수행력 (P/F)</td><td colspan="3">해당 교원은 원어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교무처의 사전 승인 없이 원어강의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F로 평가하여 재임용에서 제외함.</td></tr><tr><td>원어강의 수행력</td><td>원어강의 수행</td><td>원어강의 수행하지 않음</td></tr><tr><td>평가결과</td><td>P</td><td>F</td></tr></table> 1. 강의평가 결과 재임용심사 학기를 제외한 재임용 심사 대상 기간 내 총 강 의평가 평균 적용 가. 인문 사회 <table><tr><td>강의평가 평균점수</td><td>4.89 이상</td><td>4.85 4.88</td><td>4.78 4.84</td><td>4.70 4.77</td><td>4.56 4.69</td><td>4.55 이하</td></tr><tr><td>배 점</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d>15</td></tr></table> 나. 이공 <table><tr><td>강의평가 평균점수</td><td>4.62 이상</td><td>4.57 4.61</td><td>4.53 4.56</td><td>4.46 4.52</td><td>4.38 4.45</td><td>4.37 이하</td></tr><tr><td>배 점</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d>15</td></tr></table> 2. 교무처의 사전 승인을 통한 휴강과 보강의무 이행 여부(현 임용기간 중) <table><tr><td>미 이행 횟수</td><td>없음</td><td>1회</td><td>2회</td><td>3회 이상</td></tr><tr><td>배 점</td><td>10</td><td>8</td><td>6</td><td>4</td></tr></table> 3. 폐강 강의수 (재임용 심사 대상기간 동안 학교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 대상) <table><tr><td>총 폐강 강의수</td><td>0~1개</td><td>2개</td><td>3개 이상</td></tr><tr><td>배 점</td><td>10</td><td>8</td><td>6</td></tr></table> 4. 강의제반 직무 수행력(현 임용기간 중) <table><tr><th>구분</th><th>점수 (학점당)</th></tr><tr><td>강의계획서 미작성</td><td>-1</td></tr><tr><td>성적평가 입력기한 경과</td><td>-1</td></tr><tr><td>해당사항 없음</td><td>10점 부여</td></tr></table>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10점을 부여하며 두 항목 합산하 여 최대 10점부터 0점까지 감점함 5. 강의평가 결과 개선도(가·감점 최대5점) 현 임용기간 중 최근 2개학기의 개선도에 따라 가·감점을 부 여하며 임용기간이 1년인 재임용 대상자는 이전 임용기간의 두 번째학기 강의평가 결과대비 개선도를 평가하되 가점만 부 여함 <table><tr><td>이전학기 대비</td><td>+ 0.2 이상</td><td>+ 0.1 이상</td><td>동일</td><td>-0.1 이상</td><td>-0.2 이상</td></tr><tr><td>배 점</td><td>+5점</td><td>+3점</td><td>0</td><td>-3점</td><td>-5점</td></tr></table>	평가항목	평가요소			원어강의 수행력 (P/F)	해당 교원은 원어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교무처의 사전 승인 없이 원어강의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F로 평가하여 재임용에서 제외함.			원어강의 수행력	원어강의 수행	원어강의 수행하지 않음	평가결과	P	F	강의평가 평균점수	4.89 이상	4.85 4.88	4.78 4.84	4.70 4.77	4.56 4.69	4.55 이하	배 점	30	27	24	21	18	15	강의평가 평균점수	4.62 이상	4.57 4.61	4.53 4.56	4.46 4.52	4.38 4.45	4.37 이하	배 점	30	27	24	21	18	15	미 이행 횟수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배 점	10	8	6	4	총 폐강 강의수	0~1개	2개	3개 이상	배 점	10	8	6	구분	점수 (학점당)	강의계획서 미작성	-1	성적평가 입력기한 경과	-1	해당사항 없음	10점 부여	이전학기 대비	+ 0.2 이상	+ 0.1 이상	동일	-0.1 이상	-0.2 이상	배 점	+5점	+3점	0	-3점	-5점	25.3.1 이후 평가표 신설
	평가항목	평가요소																																																																																
	원어강의 수행력 (P/F)	해당 교원은 원어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교무처의 사전 승인 없이 원어강의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F로 평가하여 재임용에서 제외함.																																																																																
		원어강의 수행력	원어강의 수행	원어강의 수행하지 않음																																																																														
		평가결과	P	F																																																																														
	강의평가 평균점수	4.89 이상	4.85 4.88	4.78 4.84	4.70 4.77	4.56 4.69	4.55 이하																																																																											
	배 점	30	27	24	21	18	15																																																																											
	강의평가 평균점수	4.62 이상	4.57 4.61	4.53 4.56	4.46 4.52	4.38 4.45	4.37 이하																																																																											
	배 점	30	27	24	21	18	15																																																																											
	미 이행 횟수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배 점	10	8	6	4																																																																														
총 폐강 강의수	0~1개	2개	3개 이상																																																																															
배 점	10	8	6																																																																															
구분	점수 (학점당)																																																																																	
강의계획서 미작성	-1																																																																																	
성적평가 입력기한 경과	-1																																																																																	
해당사항 없음	10점 부여																																																																																	
이전학기 대비	+ 0.2 이상	+ 0.1 이상	동일	-0.1 이상	-0.2 이상																																																																													
배 점	+5점	+3점	0	-3점	-5점																																																																													

간인(서명)

김정철



현행	개정	비고																																																																																																															
	<table><tr><th>평가항목</th><th colspan="6">평가요소</th></tr><tr><td rowspan="16"> (신설) 학생지도 에 관한사항 (배점 40점) </td><td colspan="6">1. 교육자로서의 역량</td></tr><tr><td>항 목</td><td>상</td><td>중상</td><td>중</td><td>중하</td><td>하</td></tr><tr><td>배 점</td><td>15</td><td>12</td><td>9</td><td>6</td><td>3</td></tr><tr><td colspan="6">가. 징계를 받거나 수업 등 공식석상에서 교육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언행이 미디어에 게재된 경우 '중하'로 평가</td></tr><tr><td colspan="6">나. 학생지도에 부적절한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하' 이하로 평가</td></tr><tr><td colspan="6">다. 임용기간 동안 교육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건이 없는 경우 '중' 이상으로 평가</td></tr><tr><td colspan="6">2. 복무태도</td></tr><tr><td>항 목</td><td>상</td><td>중상</td><td>중</td><td>중하</td><td>하</td></tr><tr><td>배 점</td><td>15</td><td>12</td><td>9</td><td>6</td><td>3</td></tr><tr><td colspan="6">가. 임용기간 동안 본교 제규정에 어긋나거나 학사 행정에 협조하지 않아, 학과장 또는 학장으로 부터 1회 / 2회 / 3회 이상 (시정요구가 발생한 상황과 시점, 개선점을 명시한) 서면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각 '중' / '중하' / '하'로 평가</td></tr><tr><td colspan="6">나. 임용기간 동안 본교 제규정을 준수하고 서면 시정요구를 이행한 경우 '중상' 이상으로 평가</td></tr><tr><td colspan="6">3. 수업 충실도</td></tr><tr><td colspan="5">수업 충실도</td><td>점 수</td></tr><tr><td colspan="5">학과 및 교무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 대신 강의</td><td>1회당 -3점</td></tr><tr><td colspan="5">해당사항 없음</td><td>10점 부여</td></tr><tr><td colspan="6">학과 및 교무처의 사전 승인 하에 대강이 가능하고, 위반시 1회당 3점 감점하며 해당사항 없을 시 10점을 부여함. 단, 총 4회 이상 미 이행시 재임용에서 제외함.</td></tr><tr><td colspan="7">2.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외국인교원 평정 결과 평가항목의 개별 점수가 각각 만점의 70% 이상이어야 재임용 대상이 된다.('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 42점 이상,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28점 이상)</td></tr></table>	평가항목	평가요소						(신설) 학생지도 에 관한사항 (배점 40점)	1. 교육자로서의 역량						항 목	상	중상	중	중하	하	배 점	15	12	9	6	3	가. 징계를 받거나 수업 등 공식석상에서 교육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언행이 미디어에 게재된 경우 '중하'로 평가						나. 학생지도에 부적절한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하' 이하로 평가						다. 임용기간 동안 교육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건이 없는 경우 '중' 이상으로 평가						2. 복무태도						항 목	상	중상	중	중하	하	배 점	15	12	9	6	3	가. 임용기간 동안 본교 제규정에 어긋나거나 학사 행정에 협조하지 않아, 학과장 또는 학장으로 부터 1회 / 2회 / 3회 이상 (시정요구가 발생한 상황과 시점, 개선점을 명시한) 서면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각 '중' / '중하' / '하'로 평가						나. 임용기간 동안 본교 제규정을 준수하고 서면 시정요구를 이행한 경우 '중상' 이상으로 평가						3. 수업 충실도						수업 충실도					점 수	학과 및 교무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 대신 강의					1회당 -3점	해당사항 없음					10점 부여	학과 및 교무처의 사전 승인 하에 대강이 가능하고, 위반시 1회당 3점 감점하며 해당사항 없을 시 10점을 부여함. 단, 총 4회 이상 미 이행시 재임용에서 제외함.						2.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외국인교원 평정 결과 평가항목의 개별 점수가 각각 만점의 70% 이상 이어야 재임용 대상이 된다.('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 42점 이상,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28점 이상)							25.3.1 이후 평가표 신설
평가항목	평가요소																																																																																																																
(신설) 학생지도 에 관한사항 (배점 40점)	1. 교육자로서의 역량																																																																																																																
	항 목	상	중상	중	중하	하																																																																																																											
	배 점	15	12	9	6	3																																																																																																											
	가. 징계를 받거나 수업 등 공식석상에서 교육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언행이 미디어에 게재된 경우 '중하'로 평가																																																																																																																
	나. 학생지도에 부적절한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하' 이하로 평가																																																																																																																
	다. 임용기간 동안 교육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건이 없는 경우 '중' 이상으로 평가																																																																																																																
	2. 복무태도																																																																																																																
	항 목	상	중상	중	중하	하																																																																																																											
	배 점	15	12	9	6	3																																																																																																											
	가. 임용기간 동안 본교 제규정에 어긋나거나 학사 행정에 협조하지 않아, 학과장 또는 학장으로 부터 1회 / 2회 / 3회 이상 (시정요구가 발생한 상황과 시점, 개선점을 명시한) 서면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각 '중' / '중하' / '하'로 평가																																																																																																																
	나. 임용기간 동안 본교 제규정을 준수하고 서면 시정요구를 이행한 경우 '중상' 이상으로 평가																																																																																																																
	3. 수업 충실도																																																																																																																
	수업 충실도					점 수																																																																																																											
	학과 및 교무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 대신 강의					1회당 -3점																																																																																																											
	해당사항 없음					10점 부여																																																																																																											
	학과 및 교무처의 사전 승인 하에 대강이 가능하고, 위반시 1회당 3점 감점하며 해당사항 없을 시 10점을 부여함. 단, 총 4회 이상 미 이행시 재임용에서 제외함.																																																																																																																
2.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외국인교원 평정 결과 평가항목의 개별 점수가 각각 만점의 70% 이상 이어야 재임용 대상이 된다.('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 42점 이상,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28점 이상)																																																																																																																	
	(신설) <별표 5> 외국인교원 다년계약 심사 기준 <table><tr><th rowspan="2">계약기간</th><th colspan="2">연구점수 기준</th><th rowspan="2">강의평가 기준</th></tr><tr><th>전공강의 담당</th><th>회화강의 담당</th></tr><tr><td>2년</td><td>연 120점 이상</td><td>연 100점 이상</td><td rowspan="3">학기 평균 (인문사회) 4.80 이상 (이공) 4.55 이상</td></tr><tr><td>3년</td><td>연 240점 이상</td><td>연 200점 이상</td></tr><tr><td>5년</td><td>연 360점 이상</td><td>연 300점 이상</td></tr></table> ※ 3년 이상 재직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3년간 연구점수와 강의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td>별표 신설</td>	계약기간	연구점수 기준		강의평가 기준	전공강의 담당	회화강의 담당	2년	연 120점 이상	연 100점 이상	학기 평균 (인문사회) 4.80 이상 (이공) 4.55 이상	3년	연 240점 이상	연 200점 이상	5년	연 360점 이상	연 300점 이상	별표 신설																																																																																															
계약기간	연구점수 기준		강의평가 기준																																																																																																														
	전공강의 담당	회화강의 담당																																																																																																															
2년	연 120점 이상	연 100점 이상	학기 평균 (인문사회) 4.80 이상 (이공) 4.55 이상																																																																																																														
3년	연 240점 이상	연 200점 이상																																																																																																															
5년	연 360점 이상	연 300점 이상																																																																																																															
간인(서명)	김정철 박재호 																																																																																																																

(붙임)

한국외국어대학교 복무규정 개정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15조 (전임교원의 연구 및 학생지도시간) ① 전임교원은 강의시간(강의시수 기준표에 의함. <별표 1>)을 포함하여 1주당 32시간 이상을 연구 및 학생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5조 (전임교원의 연구 및 학생지도시간) ① 전임교원은 강의시간(강의시수 기준표에 의함. <별표 1>)을 포함하여 1주당 32시간 이상을 연구 및 학생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1 수정																																																																																												
(신설)	부 칙(2025.2.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제 15조 제 1항 <별표 1>의 신설 및 변경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강의시수 기준표	<별표 1> 강의시수 기준표	별표 수정																																																																																												
<table><tr><th>보 직 명</th><th>주당 강의시수</th><th>기본 시수</th><th>초과 시수</th><th>총시수</th></tr><tr><td colspan="5">총장 ~ 일반대학원장 (생략)</td></tr><tr><td>전문대학원장 ~ 글로벌창업 지원단장(생략) (신설)</td><td>5.5</td><td>8</td><td></td><td>13.5</td></tr><tr><td>부학장 ~ 기술이전센터장 (생략), 다음=德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생략), (신설) (신설) (신설)</td><td>6.5</td><td>8</td><td></td><td>14.5</td></tr><tr><td colspan="5">정년트랙 전임교원 (생략)</td></tr><tr><td rowspan="5">특성화 트랙 전임 교원</td><td>학술지원교수</td><td>7.5</td><td>8</td><td>15.5</td></tr><tr><td>산학협력중점교수</td><td>3</td><td>2</td><td>5</td></tr><tr><td>연구중심교수</td><td>3</td><td>2</td><td>5</td></tr><tr><td>강의중심교수</td><td>12</td><td>제한 없음</td><td></td></tr><tr><td colspan="4">(신설)</td></tr></table>	보 직 명		주당 강의시수	기본 시수	초과 시수	총시수	총장 ~ 일반대학원장 (생략)					전문대학원장 ~ 글로벌창업 지원단장(생략) (신설)	5.5	8		13.5	부학장 ~ 기술이전센터장 (생략), 다음=德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생략), (신설) (신설) (신설)	6.5	8		14.5	정년트랙 전임교원 (생략)					특성화 트랙 전임 교원	학술지원교수	7.5	8	15.5	산학협력중점교수	3	2	5	연구중심교수	3	2	5	강의중심교수	12	제한 없음		(신설)				<table><tr><th>보 직 명</th><th>주당 강의시수</th><th>기본 시수</th><th>초과 시수</th><th>총시수</th></tr><tr><td colspan="5">총장 ~ 일반대학원장 (현행과 같음)</td></tr><tr><td>전문대학원장 ~ 글로벌창업 지원단장(현행과 같음) 연구윤리센터장</td><td>5.5</td><td>8</td><td></td><td>13.5</td></tr><tr><td>부학장 ~ 기술이전센터장 (현행과 같음), 인성교육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현행과 같음), 전공자율선택 학생지도교수, 교양교육연구센터장, 기초교육센터장.</td><td>6.5</td><td>8</td><td></td><td>14.5</td></tr><tr><td colspan="5">정년트랙 전임교원 (현행과 같음)</td></tr><tr><td rowspan="5">특성화 트랙 전임 교원</td><td>학술지원교수</td><td>7.5</td><td>8</td><td>15.5</td></tr><tr><td>산학협력중점교수</td><td>3</td><td>2</td><td>5</td></tr><tr><td>연구중심교수</td><td>3</td><td>2</td><td>5</td></tr><tr><td>강의중심교수</td><td>12</td><td>제한 없음</td><td></td></tr><tr><td>학생지도중심교수</td><td>3</td><td>2</td><td>5</td></tr></table>	보 직 명	주당 강의시수	기본 시수	초과 시수	총시수	총장 ~ 일반대학원장 (현행과 같음)					전문대학원장 ~ 글로벌창업 지원단장(현행과 같음) 연구윤리센터장	5.5	8		13.5	부학장 ~ 기술이전센터장 (현행과 같음), 인성교육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현행과 같음), 전공자율선택 학생지도교수, 교양교육연구센터장, 기초교육센터장.	6.5	8		14.5	정년트랙 전임교원 (현행과 같음)					특성화 트랙 전임 교원	학술지원교수	7.5	8	15.5	산학협력중점교수	3	2	5	연구중심교수	3	2	5	강의중심교수	12	제한 없음		학생지도중심교수	3	2	5
보 직 명	주당 강의시수		기본 시수	초과 시수	총시수																																																																																									
총장 ~ 일반대학원장 (생략)																																																																																														
전문대학원장 ~ 글로벌창업 지원단장(생략) (신설)	5.5		8		13.5																																																																																									
부학장 ~ 기술이전센터장 (생략), 다음=德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생략), (신설) (신설) (신설)	6.5	8		14.5																																																																																										
정년트랙 전임교원 (생략)																																																																																														
특성화 트랙 전임 교원	학술지원교수	7.5	8	15.5																																																																																										
	산학협력중점교수	3	2	5																																																																																										
	연구중심교수	3	2	5																																																																																										
	강의중심교수	12	제한 없음																																																																																											
	(신설)																																																																																													
보 직 명	주당 강의시수	기본 시수	초과 시수	총시수																																																																																										
총장 ~ 일반대학원장 (현행과 같음)																																																																																														
전문대학원장 ~ 글로벌창업 지원단장(현행과 같음) 연구윤리센터장	5.5	8		13.5																																																																																										
부학장 ~ 기술이전센터장 (현행과 같음), 인성교육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현행과 같음), 전공자율선택 학생지도교수, 교양교육연구센터장, 기초교육센터장.	6.5	8		14.5																																																																																										
정년트랙 전임교원 (현행과 같음)																																																																																														
특성화 트랙 전임 교원	학술지원교수	7.5	8	15.5																																																																																										
	산학협력중점교수	3	2	5																																																																																										
	연구중심교수	3	2	5																																																																																										
	강의중심교수	12	제한 없음																																																																																											
	학생지도중심교수	3	2	5																																																																																										
※ 1. ~ 13.(생략)	※ 1. ~ 13.(현행과 같음)																																																																																													

간인(서명)

김정철

박재근



(붙임)

한국외국어대학교 보수규정 개정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 4 조 (봉급) 교직원의 봉급은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사정된 호급의 본봉액과 연구보조비로 한다. 1. 전임교원 봉급지급표(별표 1) 2. 직원 봉급지급표(별표 2) 3. 외국인교원 봉급 지급표<별표 3> 4. 총장 봉급지급표<별표 4>	제 4 조 (봉급) 교직원의 봉급은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사정된 호급의 본봉액과 연구보조비로 한다. 1. 전임교원 봉급지급표(별표 1) 2. 직원 봉급지급표(별표 2) 3. 외국인교원 봉급 지급표<별표 3> 4. 총장 봉급지급표<별표 4>	별표 수정
제11조 (제수당) 총장은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보직수당 <별표 6>, <별표 6-1> 2. ~ 3. (생략) 4. 가계보조비, 급양비 <별표 9> 5. ~ 6. (생략) 7. 교통보조수당 <별표 12> 8. (생략)	제11조 (제수당) 총장은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보직수당 <별표 6>, <별표 6-1> 2. ~ 3. (현행과 같음) 4. 가계보조비, 급양비 <별표 9> 5. ~ 6. (현행과 같음) 7. 교통보조수당 <별표 12> 8. (현행과 같음)	별표 수정
(신설)	부 칙(2025.2.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제 4조 제1호 <별표 1>, 제2호 <별표 2>, 제3호 <별표 3>, 제4호 <별표 4>의 인상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적용) 제 11조 제1호 <별표 6>의 보직수당 신설 및 보직 명칭 변경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적용) 제 11조 제4호 <별표 9>의 인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간인(서명)	김동철	박재은	
--------	-----	-----	---

간인(서명)

김동현

박재은



간인(서명)	김동철	홍재호	
--------	-----	-----	---

간인(서명)

김공현

석정수



간인(서명)	김정현	학 자 인	
--------	-----	-------	---

(붙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복무규정 개정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부칙 (18)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강의시수 기준표 (1년 기준) <table><tr><th>주당 강의시수 직책</th><th>기본 시수</th><th>초과 시수</th><th>계</th></tr><tr><td>총장</td><td>0</td><td>8 (4 / 4)</td><td>8 (4 / 4)</td></tr><tr><td>학장</td><td>12 (6 / 6)</td><td>12 (6 / 6)</td><td>24 (12 / 12)</td></tr><tr><td>대학원장</td><td>12 (6 / 6)</td><td>12 (6 / 6)</td><td>24 (12 / 12)</td></tr><tr><td>처장</td><td>12 (6 / 6)</td><td>12 (6 / 6)</td><td>24 (12 / 12)</td></tr><tr><td>학부(과)장 및 기타 보직 교수</td><td>15</td><td>12 (6 / 6)</td><td>27</td></tr><tr><td>교수 일반 (내국인 교원)</td><td>18 (9 / 9)</td><td>12 (6 / 6)</td><td>30 (15 / 15)</td></tr><tr><td>교수 일반 (외국인 교원)</td><td>30 (15 / 15)</td><td>12 (6 / 6)</td><td>42 (21 / 21)</td></tr><tr><td rowspan="4">특성화 트랙 전임교 원</td><td>대외협력 중점교수</td><td>18 (9 / 9)</td><td>12 (6 / 6)</td><td>30 (15 / 15)</td></tr><tr><td>교육·학 생지도중 점 교수</td><td>24 (12 / 12)</td><td>12 (6 / 6)</td><td>36 (18 / 18)</td></tr><tr><td>산학협력 중점교수</td><td>18 (9 / 9)</td><td>12 (6 / 6)</td><td>30 (15 / 15)</td></tr><tr><td></td><td></td><td></td><td></td></tr><tr><td>강사</td><td></td><td></td><td>18 (최대) (9 / 9)</td></tr><tr><td>겸임교원</td><td>12 (6 / 6)</td><td>6 (3 / 3)</td><td>18 (9 / 9)</td></tr></table>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주당 강의시수 직책	기본 시수	초과 시수	계	총장	0	8 (4 / 4)	8 (4 / 4)	학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대학원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처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학부(과)장 및 기타 보직 교수	15	12 (6 / 6)	27	교수 일반 (내국인 교원)	18 (9 / 9)	12 (6 / 6)	30 (15 / 15)	교수 일반 (외국인 교원)	30 (15 / 15)	12 (6 / 6)	42 (21 / 21)	특성화 트랙 전임교 원	대외협력 중점교수	18 (9 / 9)	12 (6 / 6)	30 (15 / 15)	교육·학 생지도중 점 교수	24 (12 / 12)	12 (6 / 6)	36 (18 / 18)	산학협력 중점교수	18 (9 / 9)	12 (6 / 6)	30 (15 / 15)					강사			18 (최대) (9 / 9)	겸임교원	12 (6 / 6)	6 (3 / 3)	18 (9 / 9)	<별표 1> 강의시수 기준표 (1년 기준) <table><tr><th>주당 강의시수 직책</th><th>기본 시수</th><th>초과 시수</th><th>계</th></tr><tr><td>총장</td><td>0</td><td>8 (4 / 4)</td><td>8 (4 / 4)</td></tr><tr><td>학장</td><td>12 (6 / 6)</td><td>12 (6 / 6)</td><td>24 (12 / 12)</td></tr><tr><td>대학원장</td><td>12 (6 / 6)</td><td>12 (6 / 6)</td><td>24 (12 / 12)</td></tr><tr><td>처장</td><td>12 (6 / 6)</td><td>12 (6 / 6)</td><td>24 (12 / 12)</td></tr><tr><td>학부(과)장, 대학 원 주임교수 및 기타 보직교수</td><td>15</td><td>12 (6 / 6)</td><td>27</td></tr><tr><td>교수 일반 (내국인 교원)</td><td>18 (9 / 9)</td><td>12 (6 / 6)</td><td>30 (15 / 15)</td></tr><tr><td>교수 일반 (외국인 교원)</td><td>30 (15 / 15)</td><td>12 (6 / 6)</td><td>42 (21 / 21)</td></tr><tr><td rowspan="4">특성화 트랙 전임교 원</td><td>대외협력 중점교수</td><td>18 (9 / 9)</td><td>12 (6 / 6)</td><td>30 (15 / 15)</td></tr><tr><td>교육·학 생지도중 점 교수</td><td>24 (12 / 12)</td><td>12 (6 / 6)</td><td>36 (18 / 18)</td></tr><tr><td>산학협력 중점교수</td><td>18 (9 / 9)</td><td>12 (6 / 6)</td><td>30 (15 / 15)</td></tr><tr><td></td><td></td><td></td><td></td></tr><tr><td>강사</td><td></td><td></td><td>18 (최대) (9 / 9)</td></tr><tr><td>겸임교원</td><td>12 (6 / 6)</td><td>6 (3 / 3)</td><td>18 (9 / 9)</td></tr></tabl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주당 강의시수 직책	기본 시수	초과 시수	계	총장	0	8 (4 / 4)	8 (4 / 4)	학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대학원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처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학부(과)장, 대학 원 주임교수 및 기타 보직교수	15	12 (6 / 6)	27	교수 일반 (내국인 교원)	18 (9 / 9)	12 (6 / 6)	30 (15 / 15)	교수 일반 (외국인 교원)	30 (15 / 15)	12 (6 / 6)	42 (21 / 21)	특성화 트랙 전임교 원	대외협력 중점교수	18 (9 / 9)	12 (6 / 6)	30 (15 / 15)	교육·학 생지도중 점 교수	24 (12 / 12)	12 (6 / 6)	36 (18 / 18)	산학협력 중점교수	18 (9 / 9)	12 (6 / 6)	30 (15 / 15)					강사			18 (최대) (9 / 9)	겸임교원	12 (6 / 6)	6 (3 / 3)	18 (9 / 9)	표 수정
주당 강의시수 직책	기본 시수	초과 시수	계																																																																																																																	
총장	0	8 (4 / 4)	8 (4 / 4)																																																																																																																	
학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대학원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처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학부(과)장 및 기타 보직 교수	15	12 (6 / 6)	27																																																																																																																	
교수 일반 (내국인 교원)	18 (9 / 9)	12 (6 / 6)	30 (15 / 15)																																																																																																																	
교수 일반 (외국인 교원)	30 (15 / 15)	12 (6 / 6)	42 (21 / 21)																																																																																																																	
특성화 트랙 전임교 원	대외협력 중점교수	18 (9 / 9)	12 (6 / 6)	30 (15 / 15)																																																																																																																
	교육·학 생지도중 점 교수	24 (12 / 12)	12 (6 / 6)	36 (18 / 18)																																																																																																																
	산학협력 중점교수	18 (9 / 9)	12 (6 / 6)	30 (15 / 15)																																																																																																																
강사			18 (최대) (9 / 9)																																																																																																																	
겸임교원	12 (6 / 6)	6 (3 / 3)	18 (9 / 9)																																																																																																																	
주당 강의시수 직책	기본 시수	초과 시수	계																																																																																																																	
총장	0	8 (4 / 4)	8 (4 / 4)																																																																																																																	
학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대학원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처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학부(과)장, 대학 원 주임교수 및 기타 보직교수	15	12 (6 / 6)	27																																																																																																																	
교수 일반 (내국인 교원)	18 (9 / 9)	12 (6 / 6)	30 (15 / 15)																																																																																																																	
교수 일반 (외국인 교원)	30 (15 / 15)	12 (6 / 6)	42 (21 / 21)																																																																																																																	
특성화 트랙 전임교 원	대외협력 중점교수	18 (9 / 9)	12 (6 / 6)	30 (15 / 15)																																																																																																																
	교육·학 생지도중 점 교수	24 (12 / 12)	12 (6 / 6)	36 (18 / 18)																																																																																																																
	산학협력 중점교수	18 (9 / 9)	12 (6 / 6)	30 (15 / 15)																																																																																																																
강사			18 (최대) (9 / 9)																																																																																																																	
겸임교원	12 (6 / 6)	6 (3 / 3)	18 (9 / 9)																																																																																																																	

간인(서명)

김경철

박재우



(붙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보수규정 개정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4조 (봉급) 교직원의 봉급은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산정된 호급의 본봉액과 연구보조비로 한다. 1. <u>교원 봉급지급표 <별표 1></u> 2. <u>직원 봉급지급표 <별표 2></u> 3. <u>외국인교원 봉급지급표 <별표 3></u> 4. <삭제> 5. <u>기타 교원 봉급지급표 <별표 4></u>	제4조 (봉급) 교직원의 봉급은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산정된 호급의 본봉액과 연구보조비로 한다. 1. <u>교원 봉급지급표 <별표 1></u> 2. <u>직원 봉급지급표 <별표 2></u> 3. <u>외국인교원 봉급지급표 <별표 3></u> 4. <삭제> 5. <u>기타 교원 봉급지급표 <별표 4></u>	
11조 (제수당) 총장은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u>보직수당 <별표 6></u> 2. 기타 제수당 <별표 7> 3. <u>급양비 <별표 8></u> 4. 초과강의료 및 대강료 <별표 9> 5. 가계보조비 및 교육훈련비 <별표 10> 6. 직책수당 <별표 11> 7. 성과급여	11조 (제수당) 총장은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u>보직수당 <별표 6></u> 2. 기타 제수당 <별표 7> 3. <u>급양비 <별표 8></u> 4. 초과강의료 및 대강료 <별표 9> 5. 가계보조비 및 교육훈련비 <별표 10> 6. 직책수당 <별표 11> 7. 성과급여	
	<u>부 칙</u> (2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신설

간인(서명)	기12 정철	이재우	
--------	--------	-----	---

간인(서명)

김정철 옥자



간인(서명)	김정철	학 자 인	
--------	-----	-------	---

간인(서명)

김동철

2020. 12. 2



(붙임)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1. 신규임용

2. 명예퇴직

3. 의원면직

4. 파견

간인(서명)	김정철	이재민	
--------	-----	-----	---

(붙임)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처분 승인사항

1. 처분대상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정기예금 중 2,000,000,000원을 처분.

(금액단위 : 원)

구분	계좌번호	보유금액 (원금기준)	처분액	처분후 잔액	비고
정기예금 (우리은행)		1,291,038,344	1,291,038,344	0	
정기예금 (우리은행)		8,961,656	8,961,656	0	
정기예금 (교직원공제회)		3,000,000,000	700,000,000	2,300,000,000	
합계		4,300,000,000	2,000,000,000	2,300,000,000	

2. 처분용도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정부담금으로 전액 전출함

3. 처 분 일 : 교육부 승인 후 즉시 처분.

4. 처분사유 :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20억원을 처분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정부담금(사학연금법인부담금)으로 전출하고자 함.

간인(서명)	김정철	박재은	
--------	-----	-----	---